

201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민 · 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발행자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박재용 부패영향분석과장

윤남기 팀장, 김정대 팀장

임기준, 박기준, 원영재, 박상현

김경희, 신희석, 김영옥, 이진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 화 (02) 360-6600 FAX : (02) 360-3549

홈페이지 www.acrc.go.kr

디자인 * 제작 : 행복을파는장사꾼 (02) 2601-0182

들어가는 말

20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육, 지방자치 분야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이 필요한 복지, 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등 교육 분야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 분야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전달 체계와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 복지 분야

정부출연기관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연구개발체계 등 과학 분야

이러한 과제들의 관련 법령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의 발굴과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과제의 법령 분석수준도 법률부터 자치법규까지 수직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접 근거법령으로부터 횡적으로 유사분야를 포괄하는 법령 까지 수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폭넓은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방식, 형식적 안건심의(자문)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 · 운영결과 측면으로 문제점을 구분하여 지위남용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등 7개 개선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의 공정성 ·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과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불확실성과 운영 · 지원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교육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경비 전출 · 보조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이전경비 지원기준의 명확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지방의회 의사중계 범위를 본회의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 · 특위까지 인터넷 중계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 · 참여를 활성화 하였다.

들어가는 말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민간 복지시설과 지자체간 협력과 연계 부족으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관간 합동 사례회의 정례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낭비를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연구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액화된 수당처럼 지급되고 있어, 임상연구비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좀 더 공정하게 임상 연구 과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임상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초점을 맞추고 부처 간막이로 인해 R&D 관련 분야의 법 규정과 현실적용이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아 연구자 선정부터 연구비 환수·제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연구비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진일보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청렴 한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서면 조사와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관과 담당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중앙행정기관 등 각 기관의 청렴·반부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

■ 부패영향평가 의의

- ▶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 발생 이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 부패영향평가 목적

- ▶ 법령 등의 불필요한 불확정 개념, 규정의 흡결, 비현실적 기준 등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비·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 법·제도상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 마련
- ▶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구체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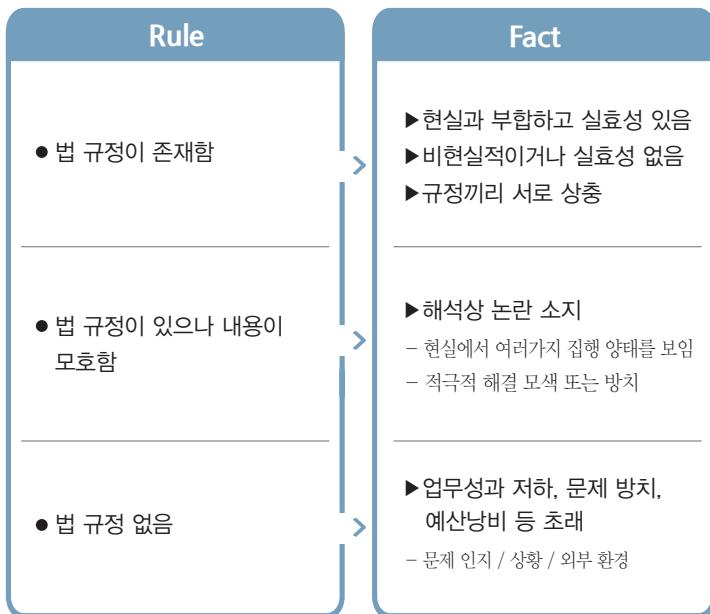
■ 규정과 현실과의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부패영향평가

- ▶ 규정(법령, 자치법규 등)과 현실과의 관계는 크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남
 - 규정이 있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거나 규정끼리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규정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정의 무시 또는 과도한 해석 등으로 위법·부당한 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
 -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규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법 집행 양태를 보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여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더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권한의 남용이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의 경우 위법행위에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절차 규정의 부재로 업무성과가 저해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도 방지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근거규정의 부재로 예산 낭비 가능성 존재

→ 부패영향평가는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하는 제도

< 규정과 현실간의 다양한 관계 >



CONTENTS

201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I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14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및 운영현황	15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3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25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26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37
II .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40
• 교육이전경비 관련현황	41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46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49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50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78
III .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 추진배경	80
• 지방의회 일반현황	81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84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86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87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91

IV.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 추진 배경	94
•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95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01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103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04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14

V.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116
• 국립병원등의 임상연구 제도 현황	117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20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121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22
• 권고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34

VI.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136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념 및 추진체계	137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43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146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47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84

I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 활성화와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적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국·공립: 1996년, 사립: 2000년)
- 매년 교육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한 학교 예산 및 결산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의 비중 증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10→'13)
총 세출예산	291.8조원	309.1조원	325.4조원	349조원	정부예산
교육 예산	37.9조원	40.9조원	45.8조원	50.4조원	12.5조원 증가
총 예산 대비 비중	13.0%	13.2%	14.1%	14.4%	1.4%p 증가

※ 자료 : 기획재정부

- ◎ 학교 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이 중요
- 그러나 불합리한 위원구성 방식, 형식적 안건심의, 학교운영위원 연루 비리 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정

[참고 1]

- 전국 초·중·고교 516곳의 2012학년도 회의안건 처리결과, 전체안건 19,837건 중 가결 19,791건(99.8%), 부결 46건(0.2%)
【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2008~2011. 9월 동안 16개 교육청 관할 461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이 소유한 업체와 총 5,229건(합계 79억원)의 부당 수의계약 사례 적발
【12. 5월, 감사원 감사】

-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구성, 운영, 운영결과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및 운영현황 |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 1995년 5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5.31 교육개혁')에서 도입 발표
- 1995. 7.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 1995년 하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부터 실시,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
- 2000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 의무화

◎ 법적성격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법적기구
- 집행기관인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

◎ 국·공립 및 사립학교 비교

- 학교운영 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 심의 · 자문사항

국 · 공립 학교(심의사항)	사립학교(필수 자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과 학직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 · 공립학교의 기능과 동일</p> <p><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과 학직의 제정 또는 개정 <p>< 제외되는 자문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심의·의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설치대상 :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법 제31조)
- 구성 :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정원 5인~15인 범위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 정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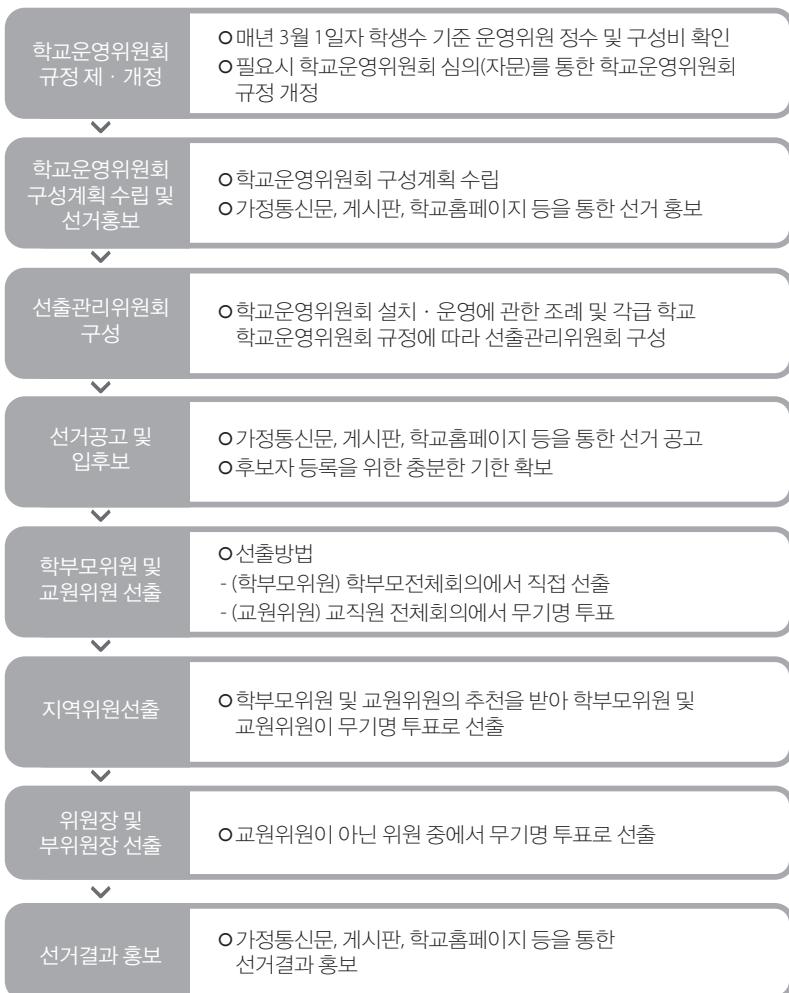
학 生 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운영위원 정수	5인 ~ 8인	9인 ~ 12인	13인 ~ 15인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 임기 등

- 위원장·부위원장은 포함한 위원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 위원 임기 등이 다름

- 임기개시일은 시 · 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4월 1일로 규정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기간과 위원정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등 규정 현황 ('13.4.1.기준) 〉

시 · 도명	위원임기	연임여부	임기 개시일	위원장 · 부위원장 임기
서울	2년	1차 연임	위원회 규정	1년, 연임
부산	2년	1차 연임	위원회 규정	1년, 연임
대구	2년	1차 연임	4.1, 9.1, 10.1 중 규정	1년, 연임
인천	1년	연임	4.1	1년, 연임
광주	1년	연임	4.1	1년, 연임
대전	1년	연임	4.1	1년, 연임
울산	1년	연임	4.1	1년, 연임
세종	1년	연임	4.1	1년, 연임
경기	1년	2차 연임	4.1	1년, 연임
강원	2년	1차 연임	4.1	1년, 연임
충북	2년	1차 연임	위원회 규정	1년, 연임
충남	1년	연임	4.1	1년, 연임
전북	2년	연임	4.1	1년, 연임
전남	1년	2차 연임	4.1	- (위원장과 동일)
경북	1년 or 2년	1차 연임	1.1, 3.1, 4.1, 9.1 중 규정	1년, 연임
경남	1년 or 2년	1차 연임	4.1	1년, 연임
제주	1년	연임	3월로 하되 규정으로 정함	1년, 연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2013. 4월 기준, 전국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1,350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 개교)

구분	초	중	고	특수	합 계
국 · 공립	5,802	2,389	1,370	69	9,630
사립	75	609	947	89	1,720
합 계	5,877	2,998	2,317	158	11,350

- 2013. 4월 기준, 전체 학교의 운영 위원 정수는 119,643명으로 이중 학부모 위원 47%, 교원위원 35%, 지역위원 18% 비중 차지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초	중	고	특 수	합 계	%
학부모위원	28,679	14,865	11,909	550	56,003	47
교원위원	21,682	11,128	9,160	436	42,406	35
지역위원	9,662	5,362	6,001	209	21,234	18
합 계	60,023	31,355	27,070	1,195	119,643	100

2. 학교운영위원회 자격 및 자격상실(퇴직)

◎ 학교운영위원회 자격

-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별로 자격 구분

학부모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운영위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퇴직)

1) 위원별 자격상실 사유 및 공통사유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사유는 시·도·조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 사유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학부모위원	•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 규정 위반 ⇨ 지위를 남용 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운위 의결로 자격상실
지역위원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지위남용으로 인한 자격상실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관련)

● 판단기준

- ① 수의 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체결
 - ※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을 분할 수의 계약한 경우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지침 등 위반
- ②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를 배제하고 특정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 ④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⑥ 운영위원의 소개, 알선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지거나 거래 조건과 절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경우

● 적용범위

- 운영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계 준비속이 거래한 경우도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결과 >

- ▶ 최근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12. 5월)에서 학교 운영위원 관련 부당사례 적발
 - 16개 교육청 관하 461개 학교에서 2008 ~ 2011. 9월 동안 운영위원 등이 소유한 업체와 총 5,229건(합계 금액 79억원)의 부당 수의계약 체결

〈학교 -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업체와의 부당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2008		2009		2010		2011. 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29	7,897,024	1,010	1,877,804	1,634	2,566,310	1,718	2,315,451	867	1,137459

▶ 부당 수의계약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와 3년간 총15건(계약금액 73백만원)의 계약 체결
-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3건의 공사를 운영위원 배우자 명의의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계약금액 22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G2B를 이용하지 않고 운영위원 소유 업체와 대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면이 첨부된 견적서도 없이 거래실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

3. 안건심의 및 심의절차 관련 제도 현황

◎ 서류제출 요구권

- 상위법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확보 수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학칙과 시·도 조례에 위임
 - 관계 서류 제출권을 명시한 곳은 서울·부산 등 14개, 규정하지 않은 곳은 인천·강원·경북 3개 교육청

〈시·도 조례 규정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류 제출 요구	17	○	○	○	×	○	○	○	○	○	○	×	○	○	○	○	○	

◎ 시정명령

- 관할청은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법 제32조 제1항	<p>①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④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⑦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⑧ 학교급식 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⑩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⑪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⑫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해당사항 없음
법 제32조 제3항	(공통)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새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64개 국정과제 중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13.3월 민생·복지, 교육, 과학, 지방 4대 분야 현행법령 추진계획 수립
- ’13.4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등 기초조사
- ’13.5~8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서면·현장조사 병행)
- ’13.9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마련



①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개요

- 서면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3.7.1. ~ 7.26.(4주 간)
 - 대상기관 :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 11,298개 각급학교
 - 조사방식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운영 현황 전수조사

- 현장 실태조사(3개 광역교육청, 3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 조사기간 : '12.11.26. ~ '13.6.21.
 - 대상기관 : 경기, 부산, 경남, 충북
 - 조사방식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계약부서, 감사부서 담당자 현장 면담 및 자료요청

② 학교운영위원회 세부 문제영역 파악

- 현장·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세부 문제영역 파악
 -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운영위원 방식 등
 - ②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비위행위 제재수준,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제도 미흡 등
 - ③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결과 : 운영위원 자격관리 미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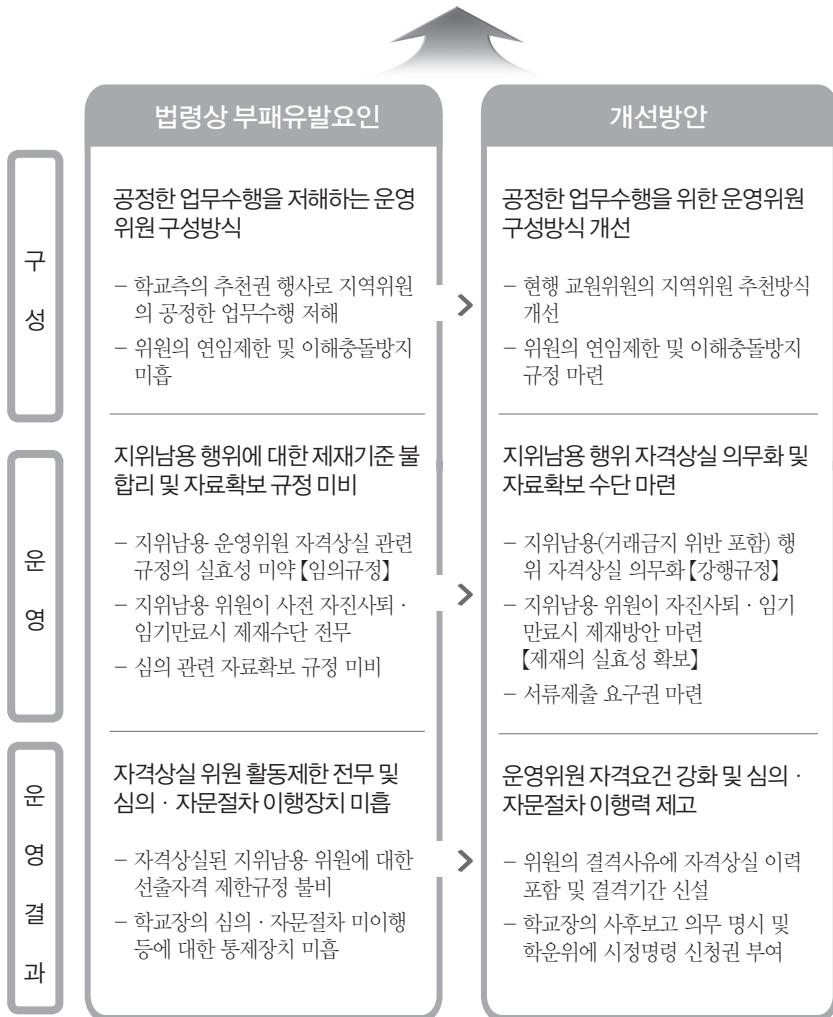
③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교차 분석

-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운영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법령과 국가공무원법, 자치단체별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학운위 법령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률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심의·자문사항 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대통령령 (동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지위남용 자격상실 포함) • 심의결과 시행, 시정명령
	행정규칙 (업무편람, 학교 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지위남용 판단기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심의·자문사항) 업무처리 요령
자치법규	학교운영 위원회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선출, 임기, 자격·자격상실, 의무 • 심의사항,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소집 등 회의 운영방법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⑥ (생략)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생략)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 학교측의 추천권 행사로 지역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 학교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행사 통제 약화

[참고 2]

'13.4.1. 기준, 전국 초·중·고교 516곳의 지역위원 1,002명 중 439명 (43.8%)이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됨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지역위원이 학교 측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워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역위원의 대표성 및 심의의 공정성 저하 우려

< 지역위원 추천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4월) >

- ▶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대학입학 추천권 등이 있어 학부모가 교장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과 인사권자인 교장의 통솔 하에 있는 교사가 지역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 ▶ 교장·교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지역위원은 친분관계로 인해 학교장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곤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형식화 초래 (경기도 소재 교육지원청)

●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 특정위원의 장기 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 문제 발생

[참고 3]

'13.4.1. 기준, 전국 초·중·고교 516곳의 학교운영위원 5,541명 중 연임위원 수는 1,837명 (33.2%)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원 임기(년)	2	2	2	1	1	1	1	1	1	2	2	1	2	1	1 or 2	1 or 2	1
연임제한	○	○	○	×	×	×	×	×	○	○	○	×	×	○	○	○	
이해충돌 방지	×	×	○	○	×	×	○	×	○	×	×	×	×	×	×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급식 및 교복·체육복 선정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심의의 공정성 저해

◎ 개선방안

● 현행 교원위원회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위원회가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선출방식 개선

————— <학교운영위원 및 전문가 간담회('13.9월)> ———

-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위원 풀(pool)제를 운영하여 해당 학교에 복수추천 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 의견 제시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상황 사전 예방 및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규정예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개선안
<신 설>	<u>제OO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u>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규정예시】 시 · 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선안
<신 설>	<u>제OO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2.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및 자료확보 수단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회의 선출 등) ① ~ ⑤ (생략)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생략)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접근성과 공개성(3~1)

◎ 문제점

-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 관련 규정의 실효성 미약
 -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도의 자격상실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 발생
 - ▶ 부패가 아닌 사유(소속 변경,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등)는 당연 퇴직되는 것과 비교하여도 제재수준의 적정성 결여
 - 특히, 지위남용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를 동일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저하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 절차〉

< 1단계 >

비위행위 적발
(외부기관, 자체)

- 외부기관: 감사원, 교육청 등
- 자체: 해당학교

< 2단계 >

지위남용 해당여부 판단
(관할청, 학운위 결정)

- 판단기준:
거래금지 위반 및 지위 남용 해당 여부 결정

< 3단계 >

자격상실 여부 판단
(학운위 결정)

- 지위남용 등 해당 →
(시안의 경증) → 자격 상실 여부 결정

[참고 4]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운영위원 469명 중 자격상실된 위원은 19명(4.1%)에 불과하고, 자진사퇴 · 임기만료로 처분 제외된 위원은 364명(77.6%). 특히, 자격상실 안건에 회부된 84건 중 65건(77.4%)이 직위유지 의결됨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사례>

-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진행한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당연퇴직'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으나 이같은 처분을 의결해야 할 학교운영위원장은 표적감사라며 자신의 당연퇴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 ('12.11월 노컷뉴스)
- ○○광역교육청은 지위를 남용한 7명의 비위행위 학교운영위원 중 5명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자격상실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위남용 위원이 사전 자진사퇴 · 임기만료시 제재수단 불비

- 지위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사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문제발생시 자진사퇴하는 사례 발생
※ 지위남용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위원 469명 중 364명(77.6%)이 자진사퇴 · 임기만료로 처분대상에서 제외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 · 임기만료로 퇴직 후, 해당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될 수 있는 문제 발생

● 심의 관련 자료확보 규정 미비

- 교육과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교복 · 체육복 선정,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등)은 엄격한 심의가 요구되나 학교 관계자의 비협조시 심의기능 저하
- ▶ 전체 17개 시 · 도 교육청 중 서류제출 요구권을 조례에 명문화한 곳은 14개 교육청

<관련사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수 200명 이상인 학교에 예결산소위원회 의무 설치,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있는 서류 및 자료 요청권 신설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 (뉴스1, '12.6월)

◎ 개선방안

- 지위남용(거래금지 위반 포함)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강행규정】
 - 지위를 남용한 경우 학운위의 자격상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자격상실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 ※ 지위남용 판단, 이의신청 등의 처리기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정함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 · 임기만료시 제재방안 마련
 - 운영위원회가 재직 중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으나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거나 위원 선출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재방안 강구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 안건과 직접 관련있는 서류제출 요구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 위원회는 의결(재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로 학교장에게 요구

【규정예시】 시 · 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선안
<신 설>	<p>제○○조(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u>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u> <u>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3.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및 심의 · 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평가대상 조문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 자연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 · 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 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 · 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 문제점

- 지위남용으로 자격상실된 위원에 대한 재선출 자격제한 규정 불비
 - 비위 행위 등으로 자격상실된 자가 언제든지 계속 활동 가능
 - ▶ 계속활동 가능 사례 : 자격상실 후 당해 학교에서 다음 임기에 재선출 또는 자녀의 학교 진학이나 전출로 소속 학교를 변경 등
 - 자격상실시 일정기간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척기간이 없어 징벌효과 미약

<제척기간 입법례>

「건축사법」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3.(생 략)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생 략)
 ②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학교장의 심의 · 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학운위 심의 · 자문 절차를 누락하거나 심의 · 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통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의 소극적 통제에 그침

[참고 5]

최근 3년간 전국 11,298개교에서 학교장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8건이며, 같은 사유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보다 61배 많은 507건으로, 전체 515건의 시정명령 · 감사처분 사례 중 492건(95.5%)이 심의·자문절차 누락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 · 자문절차를 누락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대한 보고의무 부재

〈시정명령 사유 및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시정명령 사유(시행령 61조 · 63조)	사후보고 의무 규정
심의 ·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
심의 · 의결결과 미시행	×
심의 · 자문 절차 누락	×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 사전보고 의무 있음(시행령 제60조 제1항)

◎ 개선방안

-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기간 신설
 - 지위남용 행위로 자격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위원 선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행위 위원의 진입 방지

【규정예시】 초 · 중등교육법

현행	개선안
<p>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p> <p>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제31조의3(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자격상실한다.</u></p> <p><u>③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한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상실한자는 그 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p>

-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 모든 시정명령 사유 발생시 학교장에게 관할청 및 학운위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심의 · 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서울시는 조례에 ‘시정명령 신청권’ 명문화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3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규정예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개선안
<p>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거나 시행한 경우,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1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61조와 같음)</p> <p>②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청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선안
<p>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립학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p>
<신설>	<p>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신설>	<p>⑥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청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⑤ (생략)	⑦ (현행 제63조제5항과 같음)

【규정예시】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선안
<신설>	<p>제○○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 교육감 또는 ○○○교육청 소속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교육부, 17개 광역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교원위원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교육부	'14. 0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의 연임제한)	시·도 교육청	'14.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해증돌방지 규정 마련)	교육부	'14. 07.
② 지위남용 행위 자격 상실 의무화 자료 확보 수단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교육부	'14. 0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만료시 제재 방안 마련)	교육부	'14. 0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시·도 교육청	'14. 12.
③ 운영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심의·자문 절차 이행력 제고	초·중등 교육법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 기간 신설)	교육부	'14. 1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 명령 신청권 부여)	교육부 시·도 교육청	'14. 12.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II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 교육자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증대

- 지자체 자체수입 증가율 대비, 교육경비지원 규모 증가율이 더 높음

- 광역지자체 : 최근5년간 자체수입 13.3%증가, 전출금 15.0%증가

- 기초지자체 : 최근5년간 자체수입 4.7%증가, 보조금 109.5%증가

※ 광역

- 자체수입 : '09년 52조3,179억원 → '13년 59조2,734억원(69,555억원 증가)
- 전 출 금 : '09년 7조3,310억원 → '13년 8조4,338억원(11,028억원 증가)

※ 기초

- 자체수입 : '09년 36조3,426억원 → '13년 38조 391억원(16,965억원 증가)
- 보 조 금 : '09년 7,148억원 → '13년 1조4,975억원(7,827억원 증가)

◎ 한편,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불명확성, 운영·지원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기관간 갈등 발생

- 재정지원기준의 모호성·불명확성으로 중앙부처·지자체·교육 청간에 교육경비지원 관련 갈등 야기
- 교육경비 예산의 포괄 편성·지원 등으로 보조금과 교육청 예산이 중복 지원됨으로써 사업변경, 반납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규모의 격차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및 경쟁적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저해
- 지자체의 예산여건과 정책방향 등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시기·규모를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저하

⇒ 따라서 교육경비 전출·보조금 관련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하여

- 교육이전경비 지원기준의 명확성·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수행

| 교육이전경비 관련 현황 |

1.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현황

◎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3조 교육경비에 관한 국가의 부담
 - 제11조 교육경비에 관한 지자체의 부담
 - (제2항) 광역지자체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지원
 - (제6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제7항) 광역지자체의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전국 17개 교육청 세입예산 편성 규모

- '13년 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조 4,367억원 규모
 - 중앙부처 이전수입(76.19%), 지자체 이전수입(16.84%), 자체수입(6.2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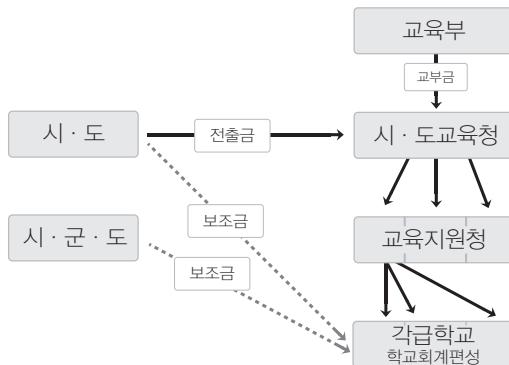
〈 편성규모 및 재원별 비중(권익위 17개 교육청 실태조사) 〉

(단위 : 억원)

계	중앙정부 이전수입 (76.2%)	지자체 이전수입(16.8%)			자체수입 등(6.3%)			지방 교육재 (0.7%)
		소 계	법정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기타 이전수입	자체 수입	이월금 등	
514,367	391,916	86,629	81,192	5,437	4,354	14,110	13,826	3,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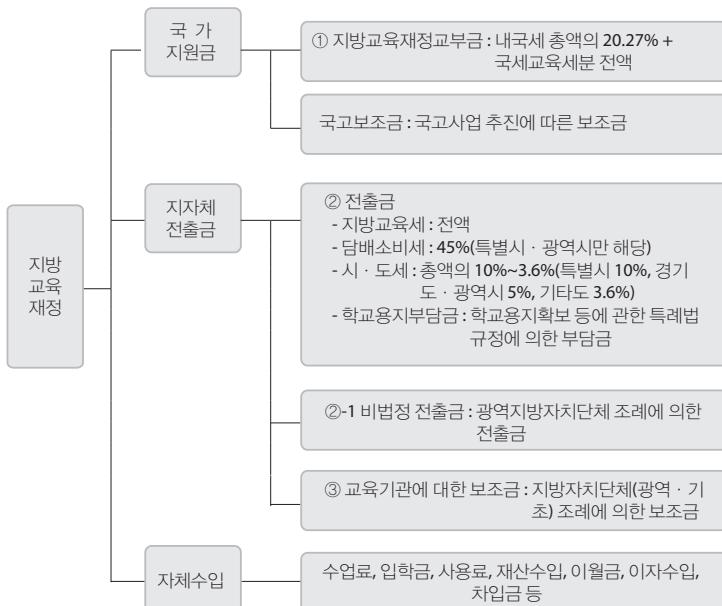
*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조 6,691억원 별도 편성 운영

【교육경비 예산 흐름도】



- ① 교부금 :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
- ② 전출금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 ③ 보조금 : 시·도 및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수입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전경비 유형 및 지원현황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광역지자체 → 시·도 교육청)

1) 전출금 종류

-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등)
 - 지방세의 일정 비율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지원, 시·도별로 전출 규모(요율) 차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도 및 특별자치도
•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 담배소비세의 45/100	• 담배소비세의 45/100 (도 제외)	
• 특별시세 총액의 10/100	• 시세·도세 총액의 5/100	• 도세 총액의 36/1000
• 학교용지매입부담금	• 학교용지매입부담금	• 학교용지매입부담금

- 비법정 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 법정 전출금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로 전출하는 지원금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는 광역지자체 조례로 규정(서울, 대구, 경남 등 3개 지자체 조례로 지원규모 규정 운영, 타 지자체는 지원규모 미규정)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를 지원('13년 지원규모 1,912억원)

2) 지원 규모

- 최근 5년간 15.0% 증가 ('09년 7조3,310억원→'13년 8조4,338억원)
 - ※

법정전출금 :	12.4% 증가 ('09년 7조2,253억원 → '13년 8조1,221억원)
비법정전출금 :	194.9% 증가 ('09년 1,057억원 → '13년 3,117억원)

3) 법정전출금 지원 흐름



※ 비법정전출금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지원

④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광역·기초지자체 → 각급 학교·교육청)

1) 지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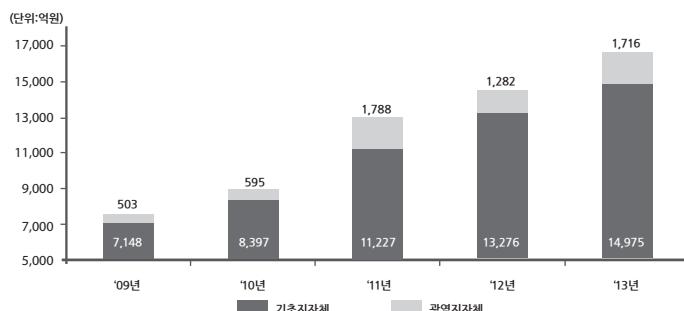
- 지자체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가능(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보조 내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그 규모는 지자체별로 상이
※ 기초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 요율 설정·운영 현황(지자체 조례로 규정)

36개 지자체	104개 지자체	67개 지자체	20개 지자체
(지방세 + 세외수입) 2% ~ 15%	(지방세) 1.5% ~ 20%	예산 범위내, 기타	지원 규모 미규정, 조례 미제정

(227개 기초지자체 대상 권익위 조사, '13. 9월)

2)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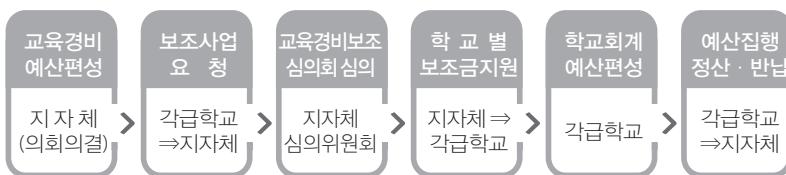
- '13년 기준 1조 6,691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118.2% 증가('09년 7,651억원)
※ 기초지자체 : 109.5% 증가('09년 7,148억원→'13년 1조 4,975억원)
광역지자체 : 241.2% 증가('09년 503억원→'13년 1,716억원)



('09~'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안전행정부)

3) 지원 체계

- (원칙) 교육경비 보조금은 예산편성 이전에 각급학교로부터 교육 경비를 요청 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단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하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현황)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포괄사업비로 편성, 예산 확정 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 규모 · 학교 등 결정



※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운영시기는 i) 예산편성 전, ii) 학교 회계 시작 전 · 후, iii) 여건별 운영 등 각 지자체별로 상이함

< 보조금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 운영 현황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2. 국고 ·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관련 지자체 현황('13년 지자체 예산개요, 안행부)

◆ 38개 지자체(시 2개, 군 28개, 자치구 8개, 지자체의 15.6%)는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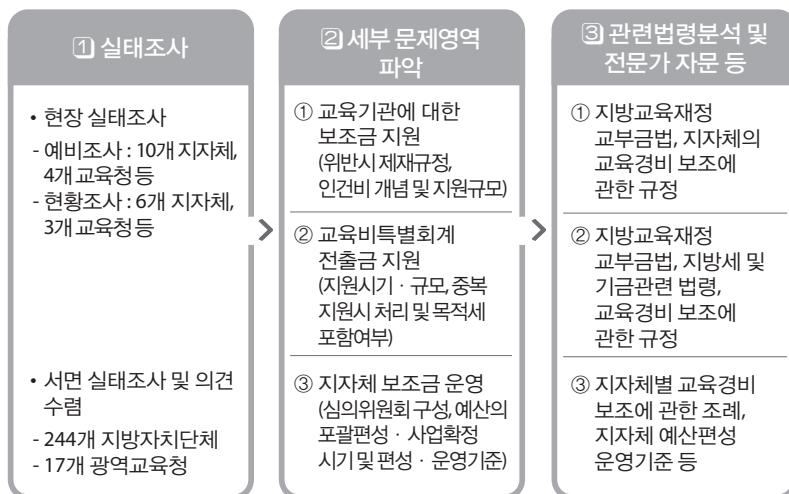
◆ 125개 지자체(시 18개, 군 69개, 자치구 38개, 지자체 51.2%)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불가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학교교육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12.11월 민생·복지, 교육, 과학, 지방 4대 분야 현행법령 추진계획 수립
- ’12.11월 교육지원경비 관련 예비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 ’13.4~5월 지자체 교육지원경비 운영실태 전수조사(서면·현장조사 병행)
- ’13.6월 교육청 교육지원경비 운영실태 전수조사(서면·현장조사 병행)
- ’13.8~10월 전문가 자문 의뢰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실태조사 개요

- 서면 조사 (1차 : 기관 대상 현황 조사, 2차 :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

구 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조사기간		'13. 4. 29 ~ 5. 24	'13. 6. 11 ~ 6. 21
조사방식		교육지원경비(전출금,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설문조사	교육지원경비(전입금, 보조금) 전입 현황 및 설문조사
조사 대상	1차	244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7)	17개 교육청(177개 교육지원청 포함)
	2차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회수율	1차	244개 지자체 제출	17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제출
	2차	236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475명 응답	17개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21명 응답

-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12. 11. 1. ~ '13. 7. 25. 기간중
- 대상기관 : 충북, 경북, 대구,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제주
- 조사기관 : 23개 기관(광역지자체 7, 교육청 4, 기초지자체 9, 교육지원청 2, 학교 1)

- 조사방식

- 지자체 : 교육경비지원·예산·세입 담당자 면담 및 자료요청
- 교육청 : 지방교육경비·예산 담당자, 행정실장 등 면담 및 자료요청

◎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육지원경비 세부 문제영역 파악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규정위반시 제재규정, 인건비 개념 및 지원규모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지원 시기·규모 및 산정방법·목적세 포함여부
- 지자체 보조금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포괄편성·세부사업 확정, 편성 기준

◎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교차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 교육지원경비 관련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지자체 조례 및 규칙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을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교육경비지원 법령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근거 및 예산계상 규모 규정 - 지원대상 세목, 세목별 지원요율 등 세부사항 규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 •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제한규정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등) • 제한규정 위반시 제재규정 미 규정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원칙 및 과목해소 등 세부사항 규정 - 포괄사업비의 편성금지: 구체적 사업예산 중심 편성 - 세출예산 편성 성질별 분류(목구름, 편성목, 통계목) 등
자치 법규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범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교육경비보조사업 교부 결정, 목적외 사용금지 및 보고 · 검사 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설치 · 운영 ※ 법정전출금 지원방법, 비법정전출금 지원 관련 광역 지자체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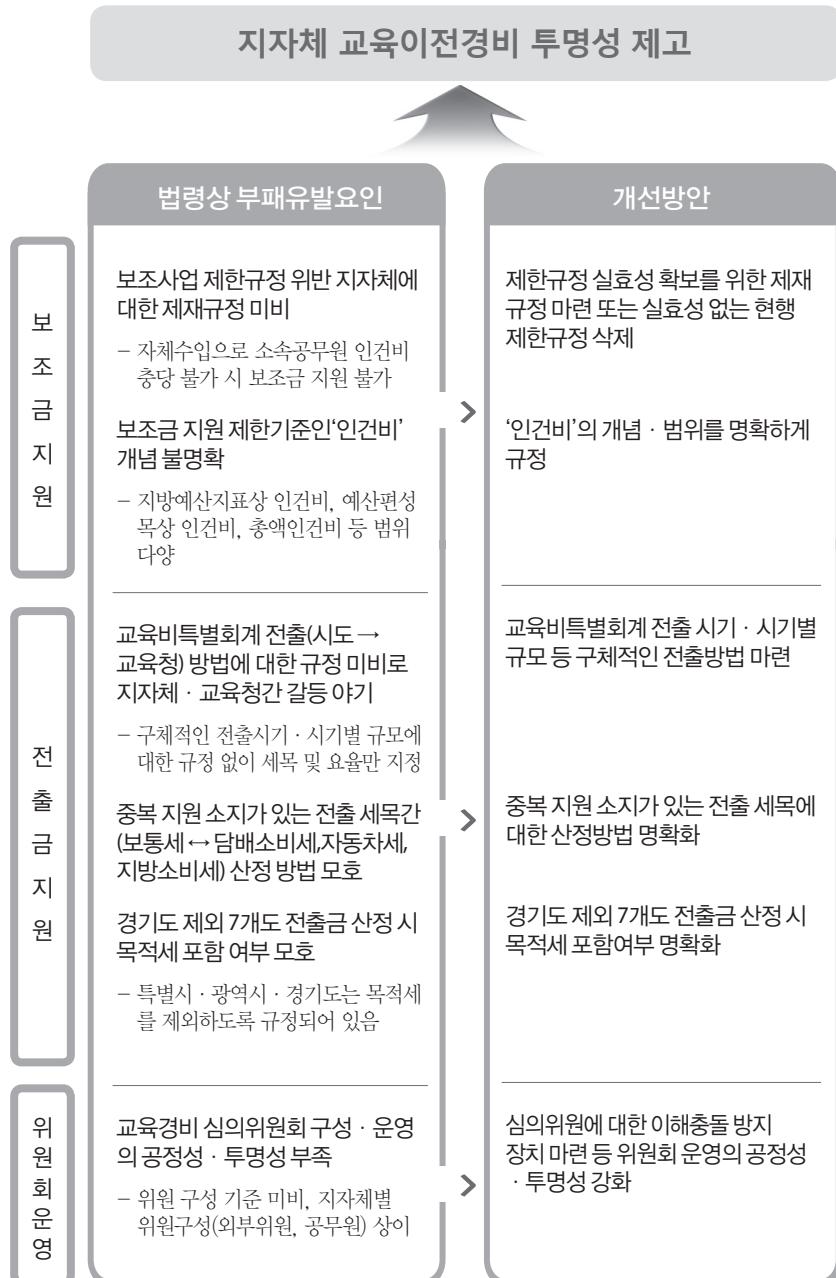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의뢰(2회 – '13. 8월 및 11월)

– 지방자치 · 지방세 · 교육행정 및 법률 전문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법리검토 및 권의위에서 마련한 검토의견 · 개선(안)에 대한 자문 실시

- 교육지원경비 실무자 간담회 개최('13.10월)

–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 교육청
실무담당자 토론, 주요쟁점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제한규정 삭제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2. 국고·광역자치단체 보조금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지원 불가
 - 교육청·광역·기초지자체의 매칭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타 지자체와의 지원액 비교 등의 사유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도 법규를 위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41개 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 70,805백만원(최고 5,392백만원, 최저 30백만원 지원)
-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저해, 지자체와 교육기관(학교)간 갈등 및 법규 위반 사례 발생

[참고 1] 교육환경 개선사업 매칭사업 추진 현황(2012년)

- ○○군의 경우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한 지자체이나 연간 3,630백만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매칭사업 부담금 1,145백만원, 군 자체사업 2,2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계	국비	교육청	광역	기초
	계	4,288	780	2,171	192	1,145
1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1,000	300	500		200
2	○○고 강당 신축 지원	1,600	480	800		320
3	아토피친화학교 보조금	530		280		250
4	무료급식 지원	1,095		580	169	346
5	친환경쌀 지원	50		4	20	26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범사업	13		7	3	3

※ 광역지자체 매칭사업비 192백만원은 기초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집행

[참고 2] 교육경비보조금 타 지자체와 비교 사례(언론보도 사례)

- ○○교육지원청 '시·무상급식 등 교육투자 인색' 서한문 물의(경기일보 2013.4.8)
 - 市 "사실왜곡 불신조장" 반발, 교장·운영위장·지역정치인·단체장들에 발송 일파만파

⑤ 개선방안

-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 제한규정 삭제

<전문가 자문결과>

Q.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 제한규정 삭제

A. 실효성이 없는 현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규정' 삭제

- ①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은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
 - 지방교부세 등을 합산한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가능
- ②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은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음

[참고 3] 제재규정 신설, 제한규정 삭제 중 택일이 아니고, '보조제한대상 지자체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매칭사업비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시 제재방안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결과>

Q. 보조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방안 규정 필요 여부

(만다, 지자체 및 지방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보조제한 지자체 관내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매칭사업비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

A.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별칙규정의 제정이 필요

* 위반시 제재방안은 과태료, 재정적 제재(지방교부세 배분 등에 불이익)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요하다는 의견 1명

2.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인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 문제점

● 보조금 교부 제한기준이 되는 인건비 개념의 모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 ‘인건비’ 개념이 불명확하여, 제한 경계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조금 교부

[참고 1] “인건비” 개념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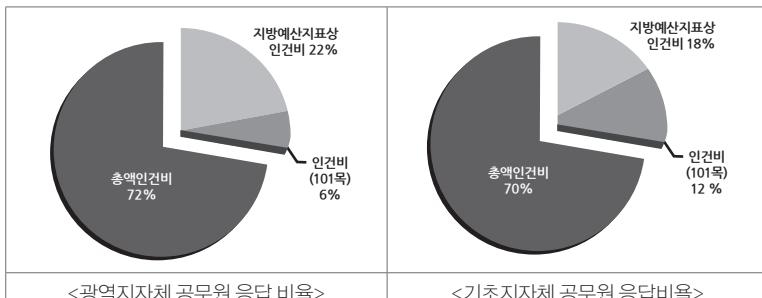
- i)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ii)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 :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iii) 총액인건비 : 인건비(101)+직급보조비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 규모 : 총액인건비 >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 >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규를 자의적 해석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참고 2] “인건비” 개념 해석 관련 설문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의 ‘인건비’ 해석과 관련하여
 - 전체 응답자 341명 중 241명(70.7%)은 ‘총액인건비’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 100명(29.3%)은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나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목)’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구 분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인건비(101목)	총액인건비	무응답
합계	65명	35명	241명	134명
광역지자체	16명	4명	52명	47명
기초지자체	49명	31명	189명	87명



(광역 · 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설문조사결과 - 권익위 '13. 5월), (*무응답 제외 비율)

◎ 개선방안

●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 방지

<전문가 자문결과>

-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불확정 범률개념으로서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해석기관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기관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인건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3. 전출금 전출 시기 · 규모 등 전출방법 명문화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생략)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생략)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생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3-2)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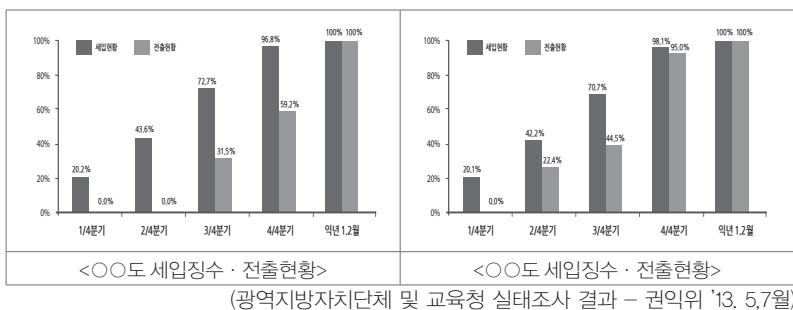
- 현행규정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대상 세입항목과 항목별 전출 비율 등 전출금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출시기 및 규모 등 전출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 이로 인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정당이나 교육이념을 달리하는 경우나, 지자체의 예산운영 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시기와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는 실정

→ 전출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교육예산의 계획적인 집행 곤란 및 지원 시기·규모와 관련 지자체·교육청간의 갈등 지속

[참고 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방법 임의 운영사례(2012년)¹⁾

- ○○도의 경우 1~2분기에는 전출이 없다가 3~4분기에 59.2%, 익년에 40.8% 전출
- ○○시의 경우 1분기에는 전출이 없고 4분기에 50.5% 전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 5.7월)

[참고 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 사례(언론보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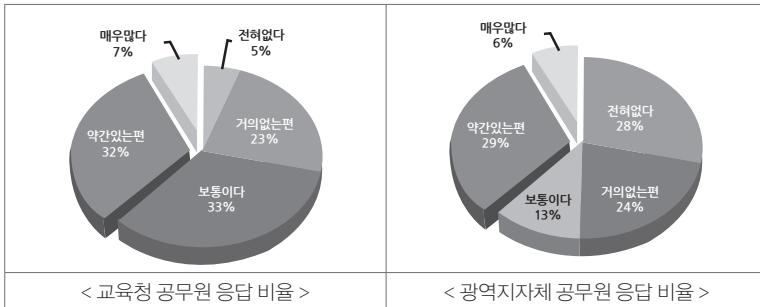
- 서울시-市교육청 이번엔 전출금 신경전(서울경제 2011.3.31)
 - “재정건전성 고려해 지급” “법정 비율대로”
- 충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필요”,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정촉구 (국민일보 2013.1.21)

1) 지방세 수납결과가 익월에 정리되므로 세입현황과 전출현황 사이에는 1개월의 시차가 있음

[참고 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 지자체 · 교육청 간 갈등에 대한 설문결과

- 지자체의 법정 전출금 전출방법(전출시기 및 시기별 전입규모 등)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143명 중 52명(36.4%)가 상호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고 응답

구 分	전혀없다	거의 없는편	보통이다	약간 있는편	매우 많다	무응답
교육 청	4명	17명	24명	23명	5명	26명
광역지자체	20명	17명	9명	20명	4명	7명



(*무응답 제외 비율)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 권익위 '13.5.7월),

◎ 개선방안

● 전출금 전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지자체 세입현황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 등을 관련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명문화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참고 4] 전출방법 규정 조례 제정 · 운영 사례 ('13.9월 기준)

구분	서울	경 기	부산	인 천	광 주	전 남
근거	서울특별시 교육 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조례	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 ·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교육 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조례	인천광역시 교육 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조례	광주광역시 교육 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조례	전라남도 교육 정책협의회 설치 · 운영조례
전출 방법	징수세액의 90/100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금고 입금액의 90/100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세액의 80/100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세액의 70/100이상을 매분기별	징수세액의 90/100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세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참고 5]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유사입법례

<유사입법례>

* 지방교부세법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4.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기준 명확화

◎ 평가대상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1. (생략)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종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종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종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 문제점

● 일부 지방세 전출세목 중 전출금 산정방법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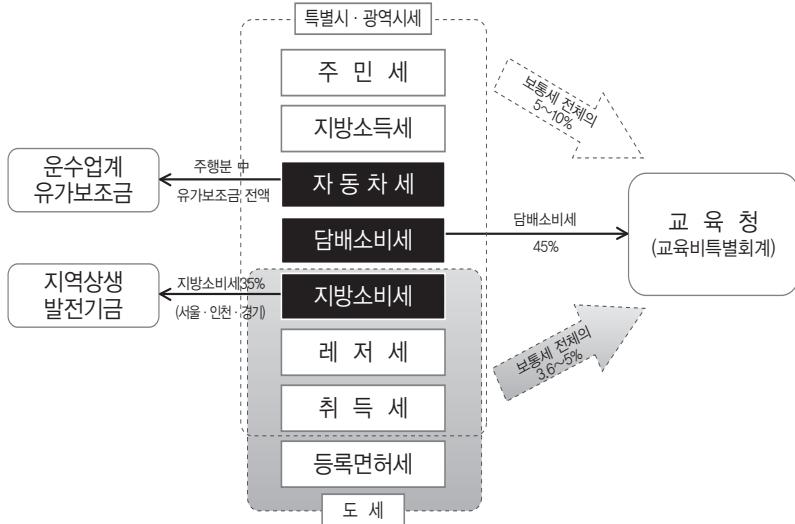
- 동일 세목이 같은 법령 내 타 조문 또는 타 법령에 의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출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 지원분으로 계상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동일 세목의 동일법령 내 조문간 또는 타 법령간 중복된 세목

세목 및 비율	담배소비세 45%	자동차세주행분 약 70%	지방소비세 35%
지원(전출)대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해당 지자체	특별시 · 광역시	특별시 · 광역시	서울 · 인천 · 경기

- 현행법상 전출 세목 및 요율만 규정,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부처 · 지자체간 갈등 상존

〈 지방세 보통세 및 교육경비 전출 구조 〉



① 담배소비세(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담배소비세의 45%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담배소비세는 특별 · 광역시의 경우 시세 보통세

- 보통세^{②)} 총액의 5~10%인 추가 전출금 산정 시, 이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담배소비세(45%)의 포함 여부 불명확

〈 적용사례 〉 담배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A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45% 전출액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 45% = 900억	① 기 전출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 5% = 100억	45억원
	② 기 전출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900억) × 5% = 55억	

2) 보통세 ① 특별시, 광역시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② 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②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100%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자동차세는 특별 · 광역시의 경우 시세 보통세

- 보통세 총액의 5~10%인 전출금 산정시 이미 지원된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포함 여부 불명확

〈적용사례〉 자동차세 세입이 2,000억원(주행분 1000억)인 B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45% 전출액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주행분 1,000억 중 유가보조금 700억 전액	①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times 5\% = 100억$	35억원
	②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 - 700억) \times 5\% = 65억$	

※ 주행분중 유가보조금이 연도별로 약 70% 내외를 점유('08년 72%, '09년 74.3%, '10년 73.4%)

③ 지방소비세(서울 · 인천 · 경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지방소비세의 35%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의 보통세

- 보통세 총액의 5~10%인 전출금 산정시 타 법령에 의거 이미 지역상생발전기금³⁾으로 출연한 세액의 포함 여부 불명확

〈적용사례〉 지방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C광역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times 35\% = 700억$	① 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경우 $2,000억 \times 5\% = 100억$	35억원
	② 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경우 $(2,000억 - 700억) \times 5\% = 65억$	

3)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설치. 발전기금은 지방채 인수 · 지방공기업 공사채 인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

〈종합〉 ○○광역시 '12년 세입예산 대비 적용 사례

(단위 : 백만원)

지방세목	지방세액	전출금 산출액			비 고
		중복분 포함 (실 전출액)	중복분 제외	증 감	
계	551,678	95,613	85,340	△ 10,273	
담배소비세	151,175	75,588	72,186	△ 3,402	담배소비세 45%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자동차세	309,649	15,482	10,201	△ 5,281	
소유분	158,761	7,938	7,938	0	
주행분	150,888	7,544	2,263	△ 5,281	주행분의 약 70%인 유가 보조금 전액 운수업체지원
지방소비세	90,854	4,543	2,953	△ 1,590	지방소비세 35%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

※ 중복분을 제외하여 전출액을 산정할 경우 103억원 차액 발생

◎ 개선방안

-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 조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타 법령간 중복되고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전문가 자문결과, 유사입법례>

[전문가 자문결과]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중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금 재원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이므로 전출금 산정기준인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교육경비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확충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중복하여 지출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단서조항 추가의견 1명)

[유사입법례]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5.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 명확화

◎ 평가대상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생략)

② 1, 2(생략)

3. -----,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 문제점

- 경기도 제외 7개 도에서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 여부 불명확
 - 특별시 · 광역시 · 경기도는 ‘목적세 제외’ 단서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4.12.30.)시 경기도 이외의 도는 개정 전에 있던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해석상 문제 제기
 - 실제로는 경기도 이외의 도에서도 목적세를 제외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산정하여 전출하고 있는 실정

2004년 개정 전		2004년 개정 후	
시 · 도세 총액의 3.6% (단, 목적세 제외)	서울특별시	시세 10% (단, 목적세 제외)	
	광역시 · 경기도	시 · 도세 5% (단, 목적세 제외)	
	그 밖의 도	도세 3.6%	

- 경기도 · 광역시의 단서규정(목적세 제외)을 경기도를 제외한 도에도 적용되는 규정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관간 갈등 발생

④ 개선방안

●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확보

<전문가 자문결과 및 유사입법례>

[전문가 자문결과]

- 목적세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정된 세금이라는 점에서,
- 목적세를 제외하여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운영

[유사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재정 특례)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전출비용특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 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평가대상 조문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0명을 포함한 00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 □□□,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0명, △△△ 0명, ○○○ 0명을 차지단체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기능성(3-3)

◎ 문제점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의 투명성 부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대상사업 심의 · 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 ·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저하
 - 또한, 지자체 · 교육청 공무원과 지방의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거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 · 운영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 심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 13개 지자체는 공무원 · 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29개 지자체는 위원회 미구성

→ 지자체의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장치 필요

[참고 1]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 근거 :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 구성 :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 주요 심의내용
 -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참고 2]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사례

구 분	계	공무원	지방 의원	교 육 공 무 원	교 育 전 문 가	주 민 대 표	교 사		학부모	
							대 표	일 반	대 표	일 반
인 원	2,236	768	376	316	290	220	40	79	117	30
(비율)	100%	34.3%	16.8%	14.1%	13.0%	9.8%	1.8%	3.5%	5.2%	1.3%
○ ○ 시	12	4	2	1	2	1	1		1	
○ ○ 구	13	3	3	1	3			1		2
○ ○ 구	9	4	3	2						
○ ○ 군	18	18								
○ ○ 도 ; 위원회 없음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 권의위 '13.5월)

◎ 개선방안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사대표 등)이 전체의 1/3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확대
 - ※ 현재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자체는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 · 구성

7. 기타 참고의견

1) 교육경비보조금 합리적 지원규모(요율) 설정 검토

p.66

- 관련법령에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편차 및 지원규모 관련 기관간 갈등 발생

⇒ 교육지원경비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지원경비 관련 기관간 갈등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규모(요율) 설정 방안 검토

2) 보조예산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p.69

- 보조금 예산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외부요인에 따라 지원액 편차 및 지자체·교육청간 중복지원 발생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조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3) 교육경비사업 예산 편성과목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검토

p.73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과목 설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별 자의적인 편성·운영으로 교육경비 전체규모의 분석곤란 및 결산상 문제점 발생

⇒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접근성·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통합신설·운영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 학교회계를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4) 지자체 전입금 세출예산편성시 사전협의 규정 준수 방안 마련

p.76

- 지자체 전입금의 세출예산편성시 법령에서 정한 예산협의 절차 미 이행 등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 전출금 세출예산편성 관련 갈등 발생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행정력 낭비와 기관간 갈등방지 등을 위해, 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세출예산편성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규정의 준수 방안 마련 등 검토

1) 교육경비보조금 합리적 지원규모(요율) 설정 검토

◎ 평가대상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 문제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요율) 미 규정

- 관련법령에 보조금 지원규모(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여건, 단체장의 교육철학 및 교육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편차 발생

※ 법령별 주요 내용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근거(법률) 보조사업 범위, 보조제한, 보조금 신청·집행(대통령령)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지원금 유치 독려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증가를 유도

※ 재정여건상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부 및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

→ 지자체별로 공교육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형평성 논란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저해

[참고 1] 기초 지자체별 조례상 지원 요율 조사 결과

- 227개 기초 지자체 중 예산 범위 내 지원(62개), 지원규모 규정 없음(4개), 조례 미제정(16개) 등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82개
- 조례상 지원규모가 구체화되어 있는 145개 지자체도 지원요율이 최저 지방세의 0.5% 이상 부터 최대 세외수입의 25%까지 다양

요율	기준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
상한 규정	1.5% 이내	1			
	2%~4.9% 이내	29	8		2
	5% 이내	30	16		1
	6%~10% 이내	27	11		
	11%~20% 이내	9	1		
	25% 이내			1	
하한 규정	0.5%~1.0% 이상	2			1
	3% 이상	5			
	8% 이상	1			
	계	104	36	1	4

(227개 기초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 – 권익위 '13. 9월)

[참고 2] 기초 지자체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 조사 결과⁴⁾

- 편성규모('13년 기준) : 최저 1.5억원에서 최대 496.9억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00억 이상	2	1	0	1	5
200억~400억 미만	1	1	9	9	8
100억~200억 미만	6	11	19	28	27
50억~100억 미만	24	28	47	47	45
30억~50억 미만	52	51	42	49	45
10억~30억 미만	91	89	76	65	63
10억 미만	48	46	34	28	34
미지원	3	0	0	0	0

(227개 기초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 – 권익위 '13. 5월)

4) 지자체별 예산운영 과목 · 방식 상이하며,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통한 지원분 포함

[참고 3] 교육경비보조금 지역간 편차 발생 사례(언론보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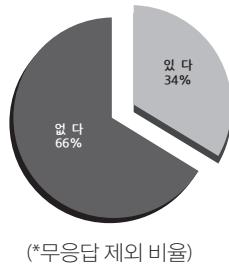
-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 지자체별 최대 10배 이상(문화일보 2011.9.6)
- 강원 33만원 - 광주 3만원 ... 서울 내 구별 편차도 커
- 충북도교육청 우수교육청 선정돼 370여억 교부금(경향신문 2013.7.11)
-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지자체 교육투자 유치, 경상비 경비절감, 학교 · 학급 통합지원 등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

[참고 4] 외부지원금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관련 설문 결과

-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유치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208명 중 70명(34%)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구 분	있 다	없 다	무응답
교육청	70명	138명	13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권의위'13.7월)



◎ 개선방안(참고의견)

●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요율) 설정 검토

- 보조금의 경쟁적 유치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기관간 갈등 방지 및 교육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요율)를 설정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 검토
※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 제정

[참고 3] 보조금 지원 규모 설정 관련 설문결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621명 중 466명(75%)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155명(25%)는 규정이 필요없다고 응답

구 분	상 · 하한선 모두 필요	상한선 필요(하한선 불요)	하한선 필요(상한선불요)	필요없다	무응답
지자체	98명	178명	14명	110명	65명
교육청	60명	11명	99명	45명	6명

(광역 · 기초지자체 및 교육청 ·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13. 5. 7월 권의위)

2) 보조예산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별표9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

제0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접근성과 공개성(3-1)

◎ 문제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 시기 불명확
 -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연도에는 포괄사업비로 편성 후, 다음 연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 학교별로 지원
 - 지자체에서 학교별로 세부 지원사업 결정 시, 각종 외부요인에 따라 동일 지자체 내에 위치한 학교간에도 교육경비지원액에 많은 편차 발생

- 심의위원회의 운영시기 등 세부규정이 없어, 지원대상 세부사업 규모 확정 시기가 불명확
- 학교별 역점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 중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등 중복 지원된 교육경비의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 발생

→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지원으로 사업변경·반납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참고 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포괄비 편성 사례(2013년)

지자체	포괄편성 사업비	비 고
○○시	78억41백만원	조례상 지원비율(지방세3%) 전체 포괄편성
○○시	40억	
○○군	17억59백만원	
○○군	13억원	
○○시	9억85백원	조례상 지원비율(지방세 결산액7%) 중 학교급식지원 금액(20억)을 제외한 금액 포괄편성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6)

[참고 2] 지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시기 유형

운영시기	계	예산편성전	1~2월	3~5월	수시운영	기 타
지자체수	215	66	61	69	4	15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미 구성 29개 지자체 (244개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익위 '13.5)

[참고 3] 국감 자적사항

- | |
|---|
| - 46억 지원받은 학교 있는데 0원 학교 65곳('10년 ○○교육청 국감 자적사항) |
|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419개교 중 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198개교, 이중 일부는 14번이나 지원 |

[참고4] 사업비 반납 사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액 반납현황			반납사유
	전입액	지출액	반납액	
체육관 신축공사(00초)	2,550	60	2,490	사업취소
급식시설설치(00중)	400	0	400	사업비 부족으로 미실시
교내바닥포장공사(00정보과학고)	299	138	161	설계변경 및 신공법사용
학생학예시청각교육 활동실구축(00초)	98	5	93	사업취소
교실내부비품구입 (00중)	48	5	43	사업일부 완료 후 반납
냉난방기 교체(00중)	384	123	261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옥상방수공사(00초)	35	9	26	교육청 예산과 중복지원
합주단 조직 운영	25	0	25	사업취소로 미집행

(지자체 및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익위, 13.7월)

[참고5] 사업계획 변경 사례

(단위 : 백만원)

당초지원사업명	지원액	변경추진사업명	변경액	변경, 반납사유
운동장 개선사업(00중)	300	체육관 보수사업	120	체육관 노후화
방송시설 교체공사(00초)	50	전기설비 교체공사	20	전기설비 보완
연결통로공사(00초)	35	주차장포장공사	35	소요예산 부족
학교급식시설개선(00고)	64	기술사 개·보수	64	시설개선사업 자부담

(지자체 및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의위, 13.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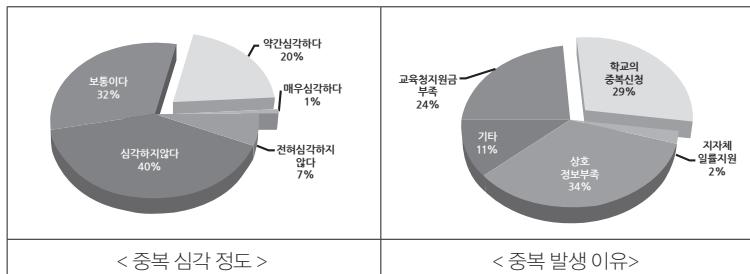
[참고 6] 교육경비 보조금 중복 관련 설문 결과

- 교육청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학교지원 중복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385명 중 82명(21.3%)이 기관간 중복지원이 심각하다고 답변

구 분	전혀심각 하지않다	심각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무응답
지자체	25명	155명	123명	78명	4명	80명

- 기관간 중복지원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호 정보부족(34.1%), 학교의 중복신청(28.4%) 순으로 답변

구 분	교육청 지원금 부족	학교의 중복신청	지자체 일률지원	상호 정보부족	기타, 무응답
지자체	21명	25명	2명	30명	10명



(*무응답 제외 비율)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13. 5. 7월 권의위)

◎ 개선방안(참고의견)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포괄편성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고려
 - 학교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검토
 - 예) • 회의구성 : 정기회 연 0회 및 임시회로 구성
 - 개최시기 :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 등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참고 7]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수범사례(○○시)

사업명	산출근거	예산액
• 연합논술 아카데미 운영지원	290,000천원*1식	290,000
• 지율학습 지도수당 지원	50,000원*102명*65일	331,500
• 일반계 고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25,000원*100개반*26일	65,000
• 특성화고 검정수수료 지원	36,000원*3,874명	139,464
• 특성화고 기능 영재반 운영 지원	56,000천원*1식	56,000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43,700천원*40명	1,748,000
• 영어 특화 고등학교 운영	15,000천원*4개교	60,000
•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지원	573,000천원*1식	573,000
• 영어 체험교실 구축 지원	25,000천원*4개교	100,000
• 방과후 교실 지원	187,050천원*1식	187,050
• 온종일 엄마풀 돌봄교실 지원	12,500천원*6개교	75,000
• 농촌중학교 EBS방송 교재비 지원	35,926천원*1식	35,926

(이) 학생 략)

[참고 8] 주민참여 예산사업 활용 수범사례(○○구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 청담초 화장실 개선공사	528,000	• 언주중 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264,000
• 중동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	9,000	• 중대부고 화변기 및 노후밸브 교체	23,000

3) 교육경비사업 예산 편성과목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검토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별표9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700 내부거래		
703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지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예측 가능성(3-2)

◎ 문제점

-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과목 설정기준의 불명확, 교육경비 지원액의 결산상 문제점 노출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사업 운영여건·방법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예산과목을 해석 운영

- 동일 예산과목에 경상적 사업(300목)과 자본형 성적 사업(400목)이 혼재되어 편성 · 운영
 -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지원대상이 상이(단위학교, 교육청)하여, 단위학교 지원분은 교육청 결산대상에서 제외되어 결산상 차액발생
-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공개성 · 접근성 저하 및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곤란으로 교육사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참고 1] 광역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과목별 예산편성 현황(본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상 전출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민간 위탁	기타
2009년	293,788	95,915	42,011	105,716	15,656	5,019	29,471
2010년	318,555	100,105	54,639	102,483	19,687	6,994	34,647
2011년	644,282	262,217	163,365	173,794	9,666	7,541	27,699
2012년	796,480	362,873	117,007	269,622	9,798	7,770	29,410
2013년	887,229	391,902	146,033	311,680	10,902	6,869	19,843

* 단. 법정전출금 제외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8월)

[참고 2] 예산과목 자의적 편성 · 운영 사례

- 친환경 급식(무상급식) - 광역자치체		
00도	00시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3-01)
- 우수농산물(쌀, 친환경 부식 등) 차액 지원		
00시	00시	00시
자료비 (206-01)	기타보상금 (301-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 우수학생 해외(어학체험)연수 지원 사업		
00군	00군	00군
민간인국외여비 (301-07)	출연금 (306-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6월)		

[참고 3] 경상적 사업과 자본형성적 사업 혼재 편성 사례(○○시)

(단위 : 백만원)

경상이전(300그룹) 성격의 예산		자본지출(400그룹) 성격의 예산	
농산어촌 및 지역방과후 학교 지원	1,100	○○중 외 1개교 다목적실 개축	650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435	○○여중 외 6급식소개축 및 환경개선	1,954
행복○○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600	○○초 환경개선 사업	105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6월)

[참고 4] 교육이전경비 결산관련 통계자료

(단위 : 백만원)

지자체일반 · 특별회계 결산자료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계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10,341,200	8,097,687	2,243,513	8,522,273	7,834,973	687,300

(안전행정부 2011년도 결산자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조2,435억원중 4,246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비 법정 이전 수입으로, 1조8,189억원은 학교회계예산에 편성 운영되어 각종 통계 작성시 제외

④ 개선방안(참고의견)

●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목 통합 · 운영방안 마련 검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교육이전 경비 관련 예산과목을 통합하여 신설(경상이전, 자본지출로 구분) · 운영하는 방안 등 고려

방안 1) 경상이전(300)과 자본지출(400)로 구분하여 예산과목(편성목)을 신설하고, 각 편성목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해석 · 운영되고 있는 통계목을 포함 · 신설하여 통합 관리 방안 검토

방안 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을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과목(통계목)을 분리하고 교육경비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 설명에 세부적으로 규정 방안 검토

-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시 학교회계를 포함하여 결산하는 방안 등 검토

4) 지자체 전입금 세출예산편성시 사전협의 규정 준수 방안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3-2)

◎ 문제점

- 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세출예산편성 사전협의 규정 이행 저조

- 광역지자체로 부터의 법정전입금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과 같은 일반재원으로 인식하여 관련법령에 사전협의의 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 등 사전협의 이행 저조

[참고] 법정전출금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예산협의 관련 설문 결과

– 법정전출금에 대한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관련 예산협의 방법에 대하여

▶ 광역지자체 전체 응답자 119명 중 '협의과정 없었음'이 29명(24.4%) 차지

※ 협의방법도 공식 문서·기구 등이 아닌 전화, 대면협의 등 다양하게 추진

공식기구 통한협의	비대면협의 (문서,전화등)	대면협의	협의과정 없었음	무응답 기타	합계
16 (13.4%)	56 (47.1%)	11 (9.2%)	29 (24.4%)	7 (5.9%)	119 (100%)

– 법정전출금에 대한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반영 정도에 대하여

▶ 광역지자체 전체 응답자 119명 중 '반영되지 않는다'가 47명(39.5%) 차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반영된다	매우 잘 반영된다	무응답	합계
29 (24.4%)	18 (15.1%)	33 (27.7%)	16 (13.45%)	16 (13.45%)	7 (5.9%)	119 (100%)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권익위 '13. 7월)

→ 법령에서 정한 예산협의 절차 미 이행 등으로 법정전입금 세출예산편성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 발생

◎ 개선방안(참고의견)

● 지자체 법정전입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시 사전협의 규정 준수 방안 마련 검토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행정력 낭비와 기관간 갈등 방지 등을 위해, 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세출예산편성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규정 준수 방안 마련 등 검토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이행 실적 저조

< 교육청 ⇌ 지자체간 협의 절차(시행령 제8조) >

①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 협의요청
(교육감 → 지자체장, 예산안 제출 전)

②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지자체장 → 교육감,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③ 시도의회에 지자체 장의 의견 첨부 제출(교육감 → 시도의회, 예산안 제출시)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 개선권고사항

분류	개선권고 관련법령	대상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한규정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제한규정 삭제)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5. 12.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인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4. 12.
전출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광역지자체 관련 조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 명문화)	교육부 광역지자체	안전행정부 교육청	'14.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기준 명확화)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지자체	'14. 12.
위원회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여부 명확화)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지자체	'14. 12.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	지방자치 단체	교육부	'14. 12.

◎ 참고의견사항

분류	참고의견 관련법령	대상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기타 참고 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 규모 설정 검토)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5. 1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포함편성 금지 명문화 검토)	안전행정부		
기타 참고 의견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검토)	지방자치 단체	교육부	'14. 07. '14. 1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목 통합·운영방안 마련 검토)	안전행정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14. 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자체 전입금 세출예산편성시 사전협의 규정 준수 방안 마련)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교육청	'14. 12.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단, 관련 부처·지자체 등 합의가 필요한 개정사항은 2년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III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 추진배경 |

- ◉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 견제,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 최근 지방의회별로 '회의록'이라는 전통적·소극적 공개방식을 넘어 적극적 의사공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
 - 일반국민들은 지방의회의 회의과정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상임위를 포함한 지방의회 회의가 인터넷 중계 방식으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8.7%를 차지
 - 88개 의회가 방청, 회의록 외에 인터넷을 통해 회의상황을 중계하고 있으나, 중계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중계 수준의 지역별 격차 발생
-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의사중계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지방의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소지 차단

| 지방의회 일반현황 |

◎ 지방의회 구성 현황

- 지방의회 · 의원정수 : 244개 의회 3,731명
(시 · 도 773, 교육 82, 시 · 군 · 구 2,876)
 - 시 · 도 의회(17) : 855명(지역 691, 비례 82, 교육 82), 평균 50.3명
 - 시 · 군 · 구 의회(227) : 2,876명(지역 2,501, 비례 375), 평균 12.7명
 - 의원정수별 분포

〈 17개 광역 의회 〉

계	15명	26명	40명 이하	50명 이하	60명 이하	70명 이하	100명 이상
17	1	3	3	4	2	2	2

〈 227개 기초의회 〉

계	7명	8~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227	52	66	81	23	5

◎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 현황(지방자치법 제56조)

- 총 244개 지방의회 중 181개 의회(광역 17, 기초 164)가 627개 상임위 설치(광역의회 모두 설치, 기초의회 중 63개 의회 상임위 미설치)
 - 시 · 도 : 17개 의회 111개 상임위(의회당 4~11개)
 - 시 · 군 · 구 : 164개 의회 516개 상임위(의회당 2~6개)

〈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현황 (2012말, 안전행정부) 〉

구분	의회수	의원 정수	상임위원회 설치 수별 의회 수									
			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	244	3,731	181	11	126	21	10	6	5			2
광역	17	855	17			1	4	5	5			2
기초	227	2,876	164	11	126	20	6	1				

◎ 지방의회 의사중계 관련 규정 현황

-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공개 원칙’만 규정(제65조)하고,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서는 회의 공개 방식을 회의록 공개, 방청 허가 등으로 규정 · 운영
- 그러나, 지방의회는 의사과정 공개를 위한 의회의 자발적 의사중계 규정 미비로 「지방자치법」의 취지(회의공개 원칙)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련규정 비교 〉

구 분	국 회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법」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중계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중계의 근거 규정- 중계 범위(모든 회의)와 우선중계 대상 (대통령 연설, 예산안심사 등)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회의규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공개, 방청 허가, 녹음 · 녹화 허가 등의 근거 규정- 의회 자체적인 인터넷 중계에 대해서는 그 근거, 대상,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음 (광역의회 중 경상남도 의회만이 의사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중계범위로 규정)

④ 인터넷 중계 실시 현황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인터넷 의사중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중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본회의 위주로, 상임위나 특위 중계는 미흡

- 184개 의회 중 96개 의회(52.2%)가 인터넷 의사중계 미실시
 - 29개 의회(15.8%)만이 본회의, 상임위 등 모든 회의 중계

〈지방의회 인터넷중계 실시 현황〉

구 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계	본회의 상임위 중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지방 의회 (184)	비율	24.5%	4.9%	2.7%	15.8%	52.2%
	수	45	9	5	29	96

〈광역·기초의회 인터넷 중계 범위 비교〉

구 分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계	본회의 상임위 중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광역 (17)	2 (11.8%)	4 (23.5%)	1 (5.9%)	7 (41.2%)	3 (17.6%)
기초 (167)	43 (25.7%)	5 (3.0%)	4 (2.4%)	22 (13.2%)	93 (55.7%)

(20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총 244개 의회 중 184개 의회 응답)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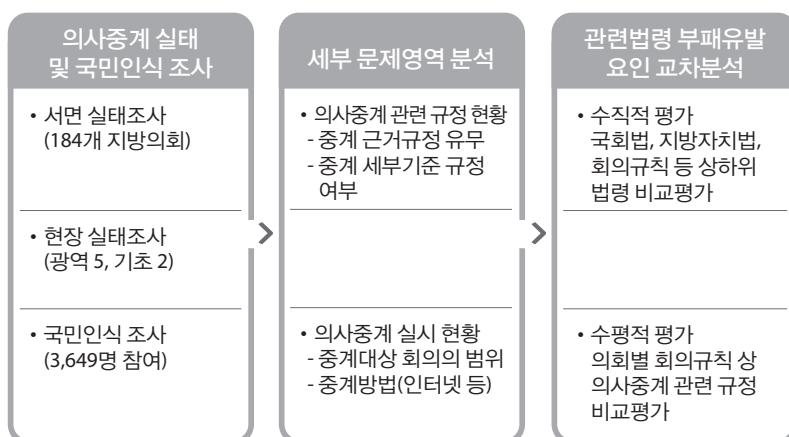
◎ 추진경위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로,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
 - 특히, 새 정부 들어 참여와 소통, 정보공개의 확대와 공동활용(칸막이 제거)이 강조되면서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의사활동의 공개·참여 요구 여론이 비등

지방의회 부패와 정쟁(政爭)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등 적극 공개와 주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며, 공개 및 투명성 원칙을 필수절차로 정착시키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문화일보 2013.1.30, 인용보도)

-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접근성 향상, 주민감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 대두

⇒ 지방의회 회의과정 공개(중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



◎ 추진경과

- 현장 실태조사(광역 5개, 기초 2개)
 - 조사기간 : '12.9.6~9.7, 2013.4.3~4.5, 4.9.(6일간)
 - 대상기관 :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전북도, 광주시 의회(광역)
진주시, 거창군 의회(기초)
 - 조사방식 : 지방의회 회의운영 관계자 면담을 통한 회의 중계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
- 서면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2.8.13~ 8.29.(3주 간)
 - 대상기관 : 전국 244개 지방의회
 - 조사방식 : 지방의회 회의 중계현황 · 의견 전수조사

〈서면실태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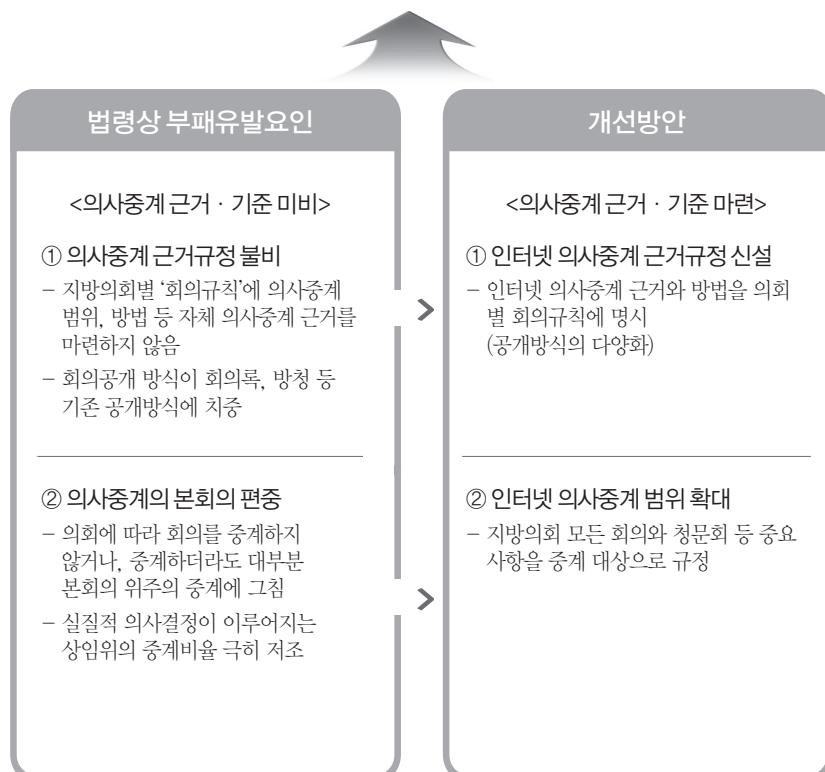
- 법령현황: 자체 의사중계를 위한 규정 미비
- 인터넷 의사중계 현황: 전체 의회의 52.2%가 인터넷 중계 미실시
- 인터넷 중계 의견: 지방의회 스스로도 인터넷 의사중계가 필요하다는 의견(65.8%)을 제시

●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조사기간 : '13.7.1~7.7. (7일간)
-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위원회 정책고객
- 조사방식 : 위원회 정책고객(PCRM)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 7개 설문항목에 대하여 총 3,649명이 설문에 참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



정보통신망 발달 및 보편화에 따른 회의중계 기반확보
(인터넷 의사중계 확대 · 활성화)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의회 회의규칙〉

〈2013.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 평가기준 : 접근성 · 공개성(3-1)

◎ 문제점

- 회의 공개 방식을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 전통적 방법 위주로 한정 · 운영함으로써 의사공개 효과 미흡

〈공개수단별 회의공개 현황〉

공개수단	회의록공개	방청허가	인터넷중계 범위	
			본회의만	모든회의
실시현황	100%	100%	24.5%	15.8%

- 지방의회와 주민 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바일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중계 방식 요구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 회의록, 방청 등을 통한 공개방식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3.5%(1,921명)가 미흡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의 인터넷 중계 필요성에 대하여 85.7%(3,08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적극적 의사공개 수단으로서 인터넷 의사중계 관련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의사공개 관련 회의규칙 규정 현황 〉

공개방법	회의규칙(표준안)	규정내용 및 공개현황
회의록	제53조(회의록 공개)	원칙공개, 비밀유지 등 필요시 비공개
방청	제83조(방청의 허가)	원칙금지, 방청권 소지 등 예외적 허가
녹음·녹화 등	제88조(녹음·녹화 등)	원칙금지, 의회 등록기자 등 제한적 허용
자체 방송	근거규정 없음	채널확보 등 어려움, 자체방송 없음
인터넷	근거규정 없음	일부 지방의회 자발적 중계 실시

- 중계대상 회의의 범위 등 중계 기준이 의회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적인 공개수준의 의회별 격차 심화
(모든 회의 중계 의회 15.8%, 모든 회의 미중계 의회 52.2%)
- 기존 공개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 중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의 오해와 불신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부패유발요인의 사전차단 기능 강화)

◎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 기존 회의록·방청 위주에서 탈피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안 마련
 - 광역의회는 위원회 개선권고 후 6개월 이내에 회의규칙 반영·시행 (기 시행중인 경상남도 의회는 제외,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근거규정 신설 및 정비 권고)
 -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수, 상임위 설치 현황,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대상과 시행시기 별도 검토

〈광역·기초의회 제반여건 비교('12년말 기준)〉

구분	의원정수 (평균)	의원 수 10인 이하 의회 수	상임위미설 치 의회 수	재정자립도 (평균)	의원1인당 경비(만원)	의원1인당 인구수(평균)
광역	52명	-	-	시 : 69.1% 도 : 34.8%	개인 : 5,346 운영 : 6,100	59,568명
기초	12.7명	109개 (48%)	63개 (27.8%)	시 : 37.1% 군 : 16.4% 자치구 : 36%	개인 : 3,479 운영 : 4,800	17,467명

(자료 : 행정안전부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규정예시】 ○○의회 회의규칙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의사중계의 범위 확대

◎ 평가대상 조문

〈○○의회 회의규칙〉

〈2013.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 평가기준 : 접근성·공개성(3-1)

◎ 문제점

-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에 각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인터넷 의사중계가 본회의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임위, 특위 회의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가 제한
(상임위 중계 의회 18.5%, 특위 중계 의회 20.7%)
- ※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지방의회 회의의 공개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7.1%(2,433명)가 '보통이하'로 응답

- 따라서, 지방의회가 ‘폐쇄적 회의운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의사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특위에 대한 의사중계 확대 필요

<상임위·특위 비공개 관련 부적정 보도사례>

-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시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백만~1천만원을 수수”(연합뉴스, '13.4.15.)
- A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씨,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을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B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씨, 시내 야간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쟁진 것으로 드러나(법률신문, 2013.4.16.)

④ 개선방안

-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현재 본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 특위까지 전면 확대 시행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외에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 조사·감사 등 중요 사안을 의사중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

【규정예시】 ○○의회 회의규칙

현행	개선안
<u><신설></u>	<p>제○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p> <p>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p> <p>③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16개 광역 자치단체 의회(경상남도 의회 제외)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지방의회 의사중계 확대 · 활성화	지방의회별 회의규칙 ①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 ②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등 세부기준 마련	16개 광역의회 (안전행정부)	'14. 02.

※ 개선권고에 대한 광역의회 이행 여부를 '1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IV

민·관연계를 통한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강화

| 추진 배경 |

- ◉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주안점을 민간자원과의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발표('11. 7월)
 - 새 정부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표 ('13. 5월)

<국정과제 내용>

- 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연계·통합
- ②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 ④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지원 총량 확대

-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개정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민간자원과 연계의 중요성 반영('13. 1월 시행)
 - ※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정부정책의 변화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복지시설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미흡
- 보조금 횡령 등 복지시설 운영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지 못하는 미약한 처분 기준으로 제재의 실효성 저하
- 수급자 등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종사자의 신변불안으로 복지서비스 기반 악화

⇒ 따라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례관리 민·관협력, 사회복지 시설의 부정행위 제재기준 및 종사자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 부폐영향평가를 수행

|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

1. 공공 · 민간의 사례관리 현황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중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중 통합사례관리사업

◎ 시 · 군 · 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 · 민간의 급여 · 서비스 · 자원 등을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연계 ·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
- 희망복지지원단은 전국 시 · 군 · 구마다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통상 자체 복지정책과내 팀 단위로 운영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례 예시>

- ▶ 대상자 상황 : 2인 가구 모자가정
- 어머니는 관절뼈 조각난 상태로 방치하여 지체장애 4급
 - 아들은 기관지 질환,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은 상황, 비닐하우스 개조하여 거주
 -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체체와 지역사회내 민간자원을 연계, 대상가구의 복합적 · 다종적 욕구에 대한 대응 가능
 - (의료) 대상자의 팔 치료, 아들의 기관지 질환 및 장애판정 지원 (oo대학병원)
 - (경제) 후원물품 지원(지역자원연계),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 (고용) 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고용센터)
 - (주 거) 뉴공사 연계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희망복지지원단), 주거지 이사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자원연계)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 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사례관리 기능 수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관의 주된 기능으로 사례 관리 규정
- ※ 전국 장애인 · 노인 · 사회복지관 중 사례관리 조직(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82% ('13.6월 권익위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

기능	사업 분야	사업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 사례회의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사례회의 개최
 - 실무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논의하는 내부사례회의와 민간시설운영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로 구분
- 보건복지부 지침인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서는 사례회의 참석 범위를 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

◎ 공공·민간 사례관리 담당인력 비교

- 복지관 사회복지사(민간)의 사례관리 업무 경력은 평균 3.5년으로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공무원)의 사례관리 경력 1.7년보다 2배 이상

〈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현황 비교 〉

전국 평균	복지관 사례관리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수	2.8명	4명
사례관리 업무 경력	3.5년	1.7년
일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38.3명	26.6명
사례회의 참석횟수('12년)	7.5회	24.6회

2.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11년 기준 약 5만 6천개소이고, 그 중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용 시설이 약 5만 개소(90%)를 차지

(단위 : 개소, 명 / '11년)

구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부랑인 (노숙인)	결핵 ·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 이집
전체	55,638	7,524	4,314	2,813	320	140	5	247	433	39,842
생활 시설	5,576	4,493	317	490	219	52	5	-	-	-
이용 시설	50,062	3,031	3,997	2,323	101	88	-	247	433	39,842

◎ 보조금 및 후원금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12년 기준으로 약 2조 3천 1백억원, 후원금은 968억원 규모

(단위 : 원, '12년 기준)

유형별	보조금	후원금
계	2조 3천 1백억	968억
장애인	8,653억	218억
아동	4,274억	252억
노인	3,176억	192억
저소득	2,212억	3억
일반사회	1,907억	255억
정신보건	1,140억	20억
여성	510억	5억
기타	1,252억	23억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등 일정 사유 발생 시에는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 기준 제시

● 처분사항에 대한 공표

-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처분 대상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관련 정보를 처분 관청 홈페이지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명령

-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임의규정)

<보조금 반환 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1,786개소 중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639개소(92%)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현황

◎ 시설 종사자 현황

- 종사자는 약 41만명으로 어린이집(25만명), 노인시설(10만명), 장애인 시설(2만 7천명)에 약 38만명(92%)이 종사

(단위 : 명 / '11년)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부랑인 (노숙인)	결핵 ·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 이집
전 체	409,355	104,162	14,176	27,579	3,083	1,507	91	1,859	8,263	248,635
생활 시설	86,593	64,143	5,504	13,367	2,518	970	91	-	-	-
이용 시설	322,762	40,019	8,672	14,212	565	537	-	1,859	8,263	248,635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현황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약 48만명('11년 기준), 그 중 여성이 약 35 만명(74%)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단위 : 명)

구 분	계	남성	여성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07년	208,866	54,714	154,152	64,799	132,621	11,446
'08년	269,073	71,251	197,822	73,969	183,315	11,790
'09년	337,651	89,616	248,035	81,255	244,383	12,013
'10년	412,815	109,492	303,323	90,988	309,612	12,215
'11년	482,807	127,876	354,931	94,623	375,776	12,408

◎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 사회복지사 중 7만 6천여명이 사회복지분야에 취업 중('12년 기준), 그 중 5만여명(70%)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

(단위 : 명)

구 분	계	민간				공공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	기타법인	기타관련 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09년	66,789	46,757	4,766	652	4,280	10,334
'10년	68,361	48,890	4,040	747	4,188	10,496
'11년	72,998	51,042	4,280	1,320	5,700	10,656
'12년	76,191	51,642	4,371	1,316	5,955	12,907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약 2만 5천명('12년 기준)이고, 그 중 복지 전담 공무원은 약 1만 3천명(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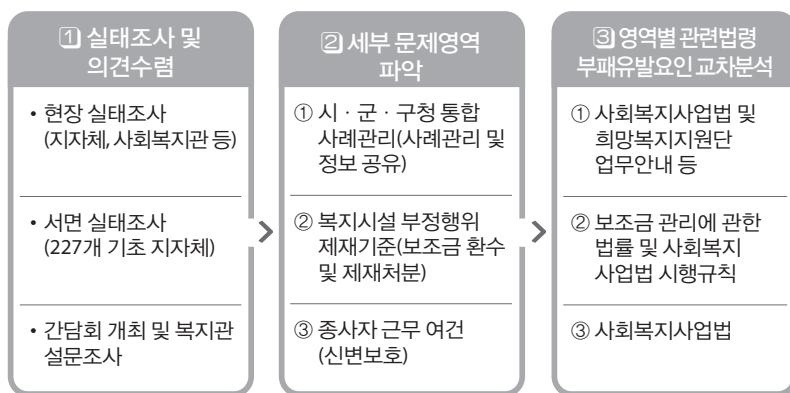
(단위, 명)

구 分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0,583	21,608	22,338	23,245	25,400
복지직 (전담공무원)	9,945	10,334	10,496	10,656	12,907
행정직	10,638	11,274	11,842	12,589	12,493

* '07~'10년은 복지부 내부 통계(지자체 취합), '11~'12년은 안행부 통계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 '13년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민생침해 부패방지를 위한 복지 분야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 사회복지사업 주체인 지자체, 복지관 등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세부 문제영역을 파악하고 영역별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 요인 분석



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기 간	대 상	방 식
'13. 3월 ~ 7월	· 경기도청, 노원구청 등 11개 지자체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담당자 등 면담
'13. 5월	· 지자체 공무원 및 복지관 운영자 등 14명	간담회 개최

● 전국 지자체 및 복지관 대상 설문조사

기 간	대 상	방 식
'13. 5월 ~ 6월	· 전국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전국 859개 장애인·노인·사회복지관 - 총 306개 기관 응답(회수율 36%)	· 자체 공문시행 · 운영현황 설문조사

② 사회복지사업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사례관리 운영 : 사례관리 서비스 중복 및 조정 미흡 등
 - 복지시설 제재 :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등
 - 종사자 근무여건 : 신변보호 법적 근거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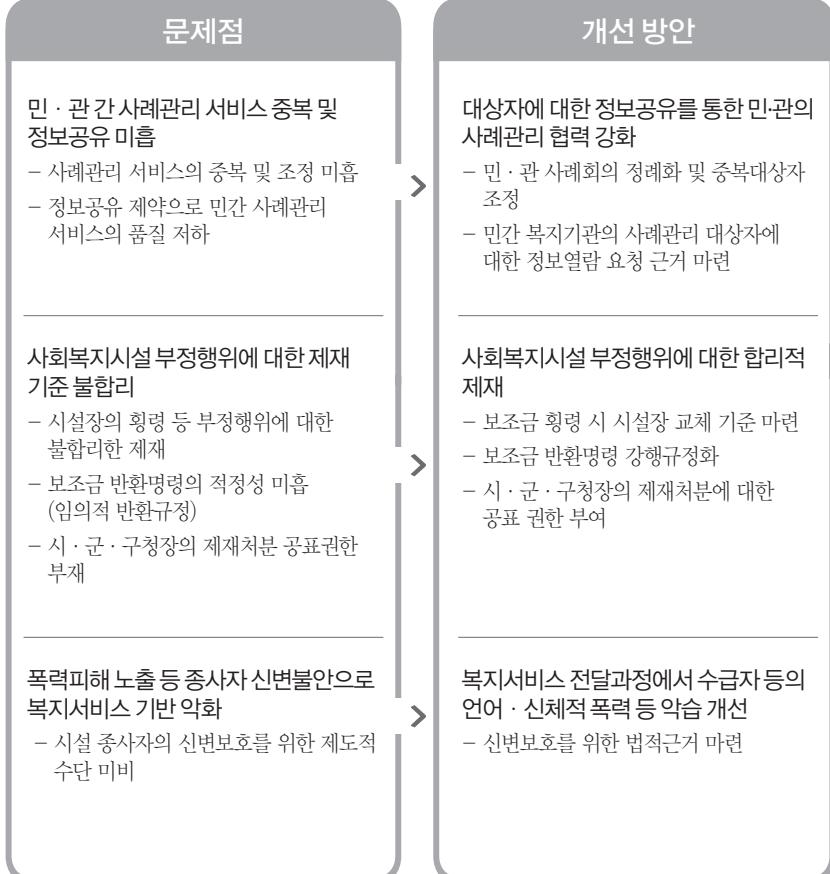
③ 영역별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교차 분석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행정규칙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사회복지사업 법령체계		주요 내용	문제영역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규정	(사례관리운영)
		· 복지시설 부정행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	(복지시설제재)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신변보호 미규정	(종사자근무여건)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시설 제재처분 공표 절차 규정	(복지시설제재)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복지시설제재)
행정규칙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업무 규정	(사례관리운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민·관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IV. 민·관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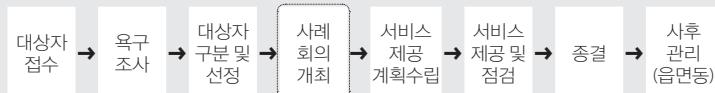
1.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민·관의 사례관리 협력 강화

◎ 평가대상 조문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 통합사례관리사업 〉

IV. 사례회의 개최



1. 개념

-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 (욕구조사를 기초로 하되, 필요시 자산조사 결과도 활용)
 - *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 그 밖에 사례관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 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검토, 주 사례 관리자의 개입방법, 사례관리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시 개최

<참고: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강점은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서비스제공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 기존의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수행 주체 : 통합사례관리조정자 + 사례관리자 전원

3. 시기 :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0일 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회의 개최(그 밖에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4. 수행 방안

-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통합사례관리조정자와 팀원(사례관리자)은 전원 참석 원칙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의뢰가구의 경우

- 자활관련 사업팀(직업상담사 등) : 자활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그 밖에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유관기관 등의 참여 고려
 - 전문가의 슈퍼비전이¹⁾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
- 정보공유 범위
- 사례회의에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조정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대상자 정보공유를 결정
 - *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은 공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5. 서식 활용 및 시스템 등록 (이하 생략)

◎ 평가 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 문제점

●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복 및 조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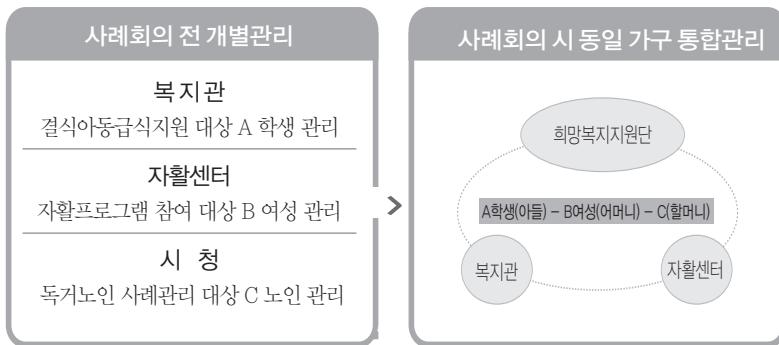
-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와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중복되고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지원 누수
- ※ 시군구 개최 사례회의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 사례 회의를 통해 회의참석 기관 간 서비스 조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5.8% ('13.6월 권익위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6월)>

- ▶ “시·군·구와 기존 기관에서의 사례중복으로 인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 시·군·구에서는 중복관리에 대한 개념 및 확인 절차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본 기관의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부산광역시 소재 복지관)
- ▶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기관과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운영이 필요함. 민간이 참여하는 사례회의 실시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원연계가 절실히 필요함.”(서울시 소재 복지관)

1)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봉사활동

〈동일가구 개별 사례관리 관련 권익위 실태조사 ('13. 6월)〉



- 대상자에 대한 정보취득 제약으로 민간의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
 -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수행 시 지자체에 대상자의 복지수급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정한 서비스 제공 곤란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시 대상자에 대한 복지수급 관련 정보를 취득·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7%, 시·군·구청에 복지수급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보취득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은 응답이 62.7%('13.6월 권리위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정보취득 관련 권리위 현장 의견수렴('13.6월)>

- ▶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복지수급 관련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현장에서는 복지수급 정보확인이 불가능하여 대상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시·군·구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음.”(서울시 소재 복지관)
- ▶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 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와의 상담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하다 보니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고, 사회복지기관이 지자체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경상북도 소재 복지관)

◎ 개선 방안

● 민·관 사례회의 정례화 및 중복 대상자 조정

- 민간의 사례회의 참여를 정기적으로 보장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민·관이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 (신설) 민관 합동 사례회의 정례화

- 지역 내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를 통한 정례 사례회의 개최 가능)
- 민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공유
- 중복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주 사례관리 기관 및 서비스 조정을 논의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협의 및 결정
- 민관 합동 사례회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 공유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정보열람 요청 근거 마련

- 대상자 보호 및 민·관 간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복지수급 정보 열람을 자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관의 사례관리 칸막이 제거

【규정예시】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개선안
<수(설)>	<p>제3장 사회복지시설 <u>제0조(보호대상자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요청)</u> 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기가정 등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 평가대상 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상
1.~3.(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10.(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

-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금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 ·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도 · 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⑥ (생략)

◎ 평가 기준 : 제재 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 사회복지시설 내의 시설장에 의한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법규위반이 발생하더라도 1차 위반의 경우 제재처분 기준은 개선명령에 불과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7월)>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인건비 횡령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장녀의 지인 16명으로부터 차명계좌 통장 18개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약 4년 6개월간 허위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4억 5천여만원을 횡령('13년, 감사원 ○○군 감사결과)

⇒ 상기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실태조사 결과, 횡령 액수가 4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

● 보조금 반환명령의 적정성 미흡

-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반환 명령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반면,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유 발생시 반환을 명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 · 군 · 구청장의 제재처분 공표 권한 부재

- 시 · 군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등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시 · 도지사와 달리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권한이 없어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지도 · 감독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도 · 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할 수 있다.

◎ 개선 방안

●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규정 마련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부정행위시 1차 위반에도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제재기준 정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신설) 시설의 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보조금 반환 명령 강행규정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사유 발생 시 반환 명령 의무화

【규정예시】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개선안
제42조(보조금 등) ① ②(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생략)	제42조(보조금 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명하여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 시 · 군 · 구청장에게 처분 공표 권한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제재처분 시 시 · 군 · 구청장도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규정예시】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개선안
제51조(지도 · 감독 등) ① ~ ④(생략) ⑤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u> 지 도 · 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 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 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생략)	제51조(지도 · 감독 등) ① ~ ④(생략) ⑤ <u>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u> <u>· 군수 · 구청장은</u> ----- ----- ----- ----- ----- ----- ⑥(생략)

3.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급자 등의 언어 · 신체적 폭력 등 악습 개선

◎ 문제점

- 현장 종사자의 폭행피해 노출 등 신변 불안으로 복지서비스 기반 악화
 -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 미비

※ 대상자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폭력 발생 이유는 ①서비스 탈락 불만, ②정신이상 · 알콜, ③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남('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담당자 피해 사례>

- ▶ 자활센터 복지프로그램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12년 4월, 대구광역시 00구)
-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가스총 5발 발사 ('10년 6월, 제주도 00시)
- ▶ 사회복지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09년 2월, 제주도 00읍)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된 생계비에 불만, 담당자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 ('06년 2월, 부산광역시 00구)

④ 개선 방안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 규정 등 참고 · 활용※ 향후 민간에 의해 유발되는 공무원 폭행 등은 부패악습으로 규정, 별도의 대책 강구 예정

【규정예시】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개선안
<u><신 설></u>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상담, 치료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절을 이유로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제1조(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u> <u>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상담, 치료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거절을 이유로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대상자 정보 공유를 통한 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사례회의 정례화 및 중복 대상자 조정)	보건복지부	'14. 00.
	사회복지사업법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정보열람 요청 근거 마련)	"	'14. 00.
②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조금 등 횡령 시 1차 위반에도 시설장 교체하도록 처분기준 마련)	"	'14. 00.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반환 명령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14. 00.
③ 종사자 신변 보호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안정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 법적 근거 마련)	"	'14. 00.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V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등은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임상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임상연구비를 지급
- ◉ 그러나, 이 임상연구비가 연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정액화된 수당처럼 변질 운영되어 임상연구제도의 실효성 저해
 - 연구를 신청한 모든 과제가 연구과제로 선정되고 동일한 연구비가 지급되는 형식적 임상연구로 국가예산 낭비
 - ※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는 적정 수준의 내부 경쟁도 없이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으니 사업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대책 마련(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 임상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임상연구 용역에 참여한 내부 의사들로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곤란
 - 기관별로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이 상이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 수준이 낮아 임상연구 성과물 공유 한계
 - 임상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연구 발생
- ◉ 한편, 국립병원 의사 수급과 관련한 진료수당 현실화 등은 임상연구 운영 개선과 별개로 주무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 따라서,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부패영향 평가를 통한 정비 필요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 제도 현황 |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 지원

-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 경찰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법무부(이하 '국립병원 등')는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임상연구를 실시한 내부 의료인력에게 임상연구비 지급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는 연구개발비(260목)로, 내부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연구 실시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 연구는 연구 개발비(260목)로 편성('13년도 기재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 지원 근거 규정

- 국립병원 등은 임상연구비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법령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

〈기관별 임상연구비 지원 근거 규정〉

구 분	관련규정	비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시행규칙
	국립서울병원	예규
	국립나주병원	예규
	국립부곡병원	예규
	국립춘천병원	예규
	국립공주병원	예규
	국립마산병원	예규
	국립목포병원	예규
	국립재활원	예규
법무부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예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훈령
경찰병원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규칙
국군의무사령부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 · 지원에 관한 훈령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 ·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	훈령

〈 임상연구비 운영을 위한 기관별 법령 등의 체계 〉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 예산

- 최근 5년('08~'12년)간 국립병원 등 12개 기관의 임상연구비는 약 112 억원으로, 연간 22.4억원이 집행되었고, 의사 1명 당 연평균 8,000 천원의 임상연구비 수령

〈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 지원 현황 〉

(연구기간 : '08~'12년)

병 원	임상연구비(천원)	연구자 수(명)
국립○○병원	885,492	98
국립○○병원	414,892	61
국립○○병원	423,800	48
국립○○병원	232,895	39
국립○○병원	445,900	51
국립○○병원	473,146	67
국립○○병원	334,158	54
국립○○병원	535,000	86
국립○○병원	372,960	63
○○기관	4,168,113	484
○○기관	2,019,907	270
○○기관	914,503	139
합 계	11,220,766	1,460

◎ 임상연구비 지원 절차

- 내부 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연구비 지급



◎ 임상연구비 정산

- 연구가 완료되면 인건비 외의 재료비, 출장비 등의 연구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 임상연구 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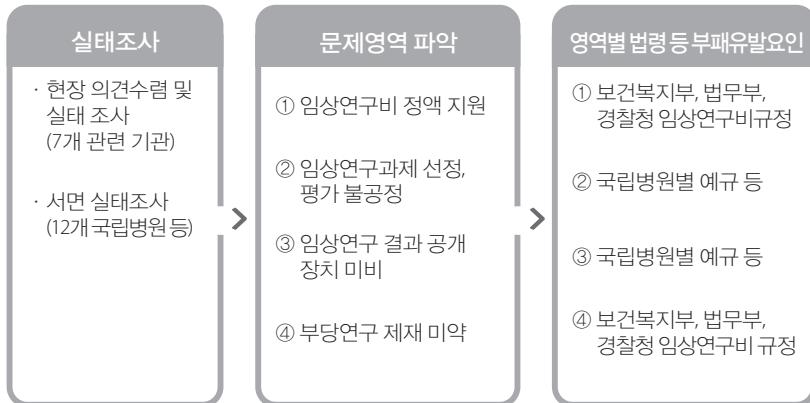
- 연구목록만을 공개하거나 논문집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 또는 관련분야 의사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임상연구 결과 공개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 경위

◎ 정부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보건의료 R&D’, ‘첨단 의료기술개발’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중요성 부각

- 따라서,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를 적정 사용하여 임상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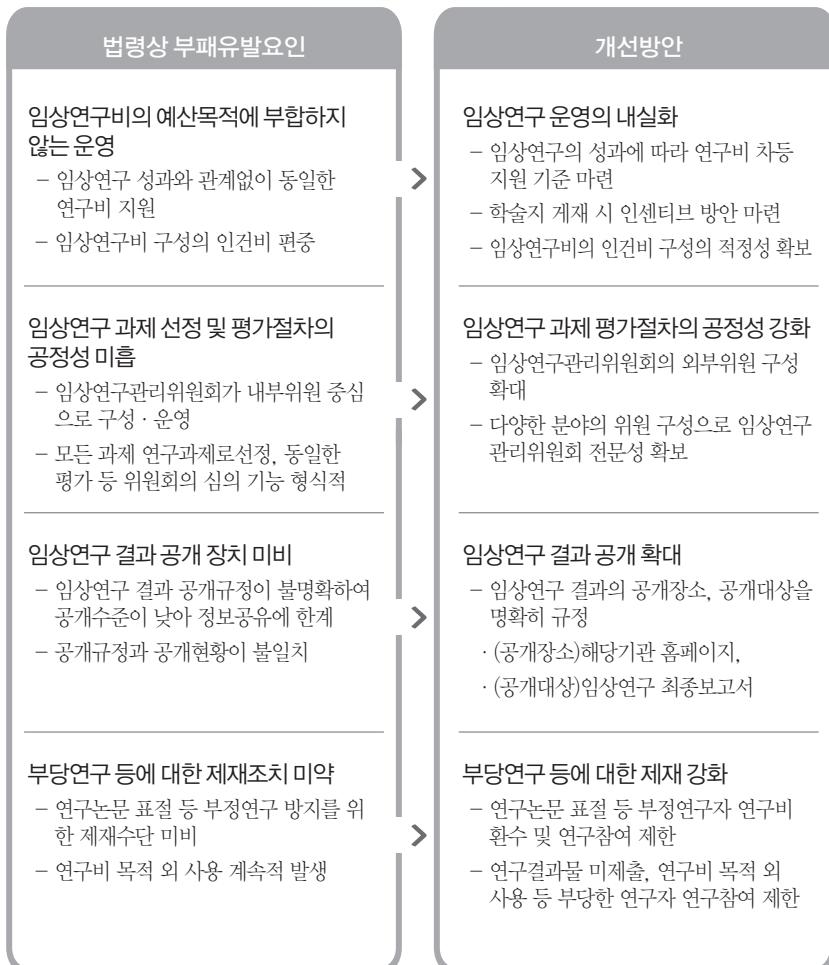


◎ 추진 경과

2013. 3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지원 방법, 부패사례 등 파악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분석 및 7개 기관 현장 방문
2013. 4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투명성 제고’ 기본계획 수립
2013. 5월	임상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 운영사항 서면 실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경찰병원 등 12개 기관 대상
2013. 6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임상연구비의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 평가대상 조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5조(연구비 지급 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생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 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 임상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구비 지급
 - 임상연구비 지원 대상자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 모두에게 동일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어 임상연구비가 정액화된 수당처럼 변질

※ 권익위 실태조사 ('13.5월)

- ○ 기관은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의사에게 연구과제의 심사 절차도 없이 매월 76만원씩 지급
- 국립○ ○ 병원은 2012년 임상연구 과제 8건(2인 공동연구)에 대해 연구 주제가 모두 다름에도 연구과제별로 14,428천원의 동일한 임상연구비 지급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08~'12년 기간 동안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의사 모두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

● 임상연구비 구성의 인건비 편중 현상 심각

- 임상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고 실제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은 소규모 금액만 계상되어 임상연구비의 연구개발 목적에 의문
- ※ '12년 한국○ ○ 기관의 연구용역 중 40,000천원 미만의 참여연구자 2인 이하의 인건비 구성 비율은 연구과제별로 10~70% 수준¹⁾
(13.5월 권익위 조사)

〈기관별 임상연구비 중 인건비 구성 비율 ('08~'12년)〉

(단위 : 천원)

병원	임상연구비(A)	인건비(B)	인건비 비율(B/A)
국립○ ○ 병원	885,492	681,408	77%
국립○ ○ 병원	414,892	372,110	90%
국립○ ○ 병원	423,800	371,444	88%
국립○ ○ 병원	232,895	226,675	97%
국립○ ○ 병원	445,900	416,560	93%
국립○ ○ 병원	372,960	349,624	94%
국립○ ○ 병원	473,146	463,299	98%
국립○ ○ 병원	334,158	326,148	98%
국립○ ○ 병원	535,000	384,295	72%
○ ○ 병원	914,503	369,138	40%
○ ○ 병원	4,168,113	4,168,113	100%
○ ○ 병원	2,019,907	2,019,907	100%

(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1) 해당 연구는 연구기관의 신진 비정규직 과학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개최하는 신진연구로 통상 타 연구용역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임

◎ 개선방안

-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마련
 - 임상연구과제의 중요도, 연구의 필요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비 지원 기준 마련
 -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정기적 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학술지로 구분

【규정 예시】 임상연구 성과 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제○조(연구비 지급 기준)

-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임상연구비의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

- 임상연구비 중 과도하게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축소하고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에 필요한 비목 계상 확대
-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준용

〈임상연구비 지원 관련 면담 사항〉

- 면담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립재활원, 국립춘천병원
- 면담일시
 - 보건복지부 : '13. 6. 17.(월), 15:00
 - 법무부 : '13. 3. 19.(화), 14:00
 - 국립재활원 : '13. 3. 13.(수), 14:00
 - 국립춘천병원 : '13. 4. 4.(목), 14:00
- 면담내용 – 임상연구비 지원 목적의 유래
 - 임상연구비 지급 초기에는 의사의 수가 적어 실력 있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도 일부 있었음
 - 현재는 민간병원과의 급여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역할도 일부 하고 있음

〈국립병원 의사와 민간병원 의사의 보수 비교〉

(2010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의사 보수 ²⁾	비율(A/B)
국립병원(A)	78,804	67.3%
민간병원(B)	117,174	100%

- 면담결과 – 임상연구비의 개선 방향
 - 국립병원 의사들 처우개선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임상연구 목적으로 지급된 연구비가 연구의 성과 등과 무관하게 정액 수당처럼 운영되는 것 또한 개선 필요
 - 따라서 본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예산의 목적에 따라 임상연구비가 적정 사용되도록 관련 법령 개선 방향 제시

2) 국립병원 의사 보수 : 2010년 연말정산자료

(보건복지부 소속 4개의 국립병원 의사 32명에 대한 연평균 임금)

민간병원 의사 보수 : 2009년 민간병원 전문의 임금의 평균치에 임금상승율(0.7%)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
(자료출처 : 중소병원의 경영현황과 정책과제, 좌용권 외, 2009년)

2.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 미흡

◎ 평가대상 조문

〈국립서울병원 임상연구협의회 규정〉

- 제2조(임상연구협의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 서울 병원 임상연구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임상진료과장이 된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임상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인 이상을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협의회 규정〉

-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임상진료 각 과장 및 약제과장이 된다.
③ 생략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 규정〉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며 각호의 자가 된다.
1.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임상연구소장
2. 그 외 병원장이 위촉한 자
③ 생략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 규정〉

-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급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2. 약제과장
3. 의료·연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 임상연구관리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 임상연구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이 임상연구용역에 참여한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임상 연구 과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곤란

〈기관별 내·외부위원 구성 규정 현황〉

위원 구성 규정	내부위원 으로만 구성	외부위원 위촉		위원회 규정 없음
		외부위원 2인 포함	외부위원 수 미규정	
대상기관 수	3개	5개	3개	1개
대상기관 명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기관

- 외부위원이 위촉된 위원회의 심의 기능 형식적
 -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도 임상연구과제 100% 심사 통과 및 연구결과 평가도 모두 동일하여 임상연구 과제 심의 기능 유명무실
 - ※ 위원회가 운영되는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위원회가 '10~'12년 동안 제출된 연구 계획서 모두를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미흡 등으로 연구비를 삽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임상연구 과제의 100% 심사 통과 등 인건비 보전 성격으로 보이는 임상연구비의 나눠먹기식 관행 개선 필요('10년 국정감사)
 - 규정상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 ※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된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운영('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임상연구 과제 선정 등을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
 - 임상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 등을 전문가의 심의 없이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임상연구의 전문성 저해
 - ※ ○○기관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100여건을 소속 기관장의 단독 검토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연구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확대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임상연구 과제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 예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 병원 내 의사들의 임상연구 분야가 다양한 점을 고려, 여러 분야의 전문가(전문의)를 위촉하여 위원의 전문성 강화

【규정 예시】임상연구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제○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 결과의 평가
2. 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3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해 관계자를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장치 미비

◎ 평가대상 조문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연구결과 활용) 법무부장관은 각 소속기관의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소속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7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 문제점

- 임상연구 결과 공개규정이 불명확하고 기관별로 상이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규정이 '관련기관 배포', '관련분야 의사 공유' 등으로 불명확하고, 기관별로 상이하여 공개수준이 낮아져 임상연구 성과물 공유에 한계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국립병원 등 12개의 기관 중 1개 기관만이 연구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 3개 기관은 연구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공개, 8개 기관은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미공개('13. 5월, 권익위 조사)

〈기관별 공개규정의 공개방법, 공개장소 구분〉

공개규정	관련기관 배포	관련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관련분야 의사 공유	공개규정 없음
대상기관수	4개	4개	2개	2
대상기관명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기관 ○○기관	국립○○병원 국립○○병원

- 공개규정과 공개현황이 불일치

- 규정상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비공개 하여 임상연구 운영의 투명성 저해
 - ※ 국립○○병원과 국립○○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등을 통해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13.5월 권익위 조사)

◎ 개선방안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가간의 임상연구 성과 공유 강화
 - (공개장소)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공개대상) 임상연구 최종보고서

* 국가 R&D 사업 결과물을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

【규정 예시】 임상연구 결과 공개 강화

제○조(연구결과의 공개) 기관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 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약

◎ 평가대상 조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제7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기관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 ·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

제19조(연구 중단)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반환 시킬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3. 연구진행이 중단되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4. 장기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5.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 부당연구 등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미비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미비하여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기관별 부당연구에 대한 제재 규정〉

구 분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군의무 사령부
① 목적 외 사용 연구비 환수	규정	규정	규정	규정
②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환수	규정	규정	규정	미규정
③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 연구비 환수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규정
①②③의 경우 연구참여 제한	미규정	미규정	③의 경우 미규정	②의 경우 미규정

※ ○○기관은 '08년부터 '10년까지의 연구과제 중 12개 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비는 집행하였으나 연구결과물이 미제출 되었음에도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는 없었음('13년 감사원 감사결과)

※ '08년 ○○기관 A는 타 학회에 발표했던 논문을 표절하여 임상연구 논문으로 제출하고 연구비 수령('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계속적 발생

-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차년도 임상연구 참여에 제한이 없어 동일 사례 반복

※ '08년 국립○○병원 B는 임상연구비로 개인적 용도의 노트북(758,000원)을 구입 하였으나 해당 노트북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는 조치 외에 추가 제재조치는 없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10년 국정감사 시 일부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 정산 영수증에 학원비나 의류구입, 노래방과 온천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10.10월, YTN뉴스)

◎ 개선방안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연구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와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마련
 - ※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부정행위 시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의2)

● 부당한 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마련

-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의 부당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여 부당연구 반복 방지
 - ※ 연구개발비 등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시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국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환수, 일정 기한 보조금 지급 정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규정 예시】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제1조(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① 기관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③ 기관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 권고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개), 경찰병원, 기획재정부(참고)

◎ 조치 사항

구 분	조치 사항
임상연구 제도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 및 학술지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임상연구비의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
임상연구 과제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연구관리위원회(평가단)의 외부위원 구성 확대○ 임상연구관리위원회(평가단) 위원의 전문성 확보
임상연구 결과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장소) 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공개대상) 임상연구 최종보고서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논문 표절 등 연구비 환수 및 일정 기간 연구 참여 제한○ 부당한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일정 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조치 기한 : '14. 8월

VI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 그동안 정부는 지식과 기술을 활발히 창출하여 그 성과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연구 개발(R&D)에 많은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 왔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연 평균('08년 ~ '12년) 증가율은 9.7%로, 같은 기간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 : 16조원('12년 기준)
- 또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지식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국정과제 내용>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중을 '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 ('11년 4.03%)
- ②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편
*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예산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관리 개선
- ③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 등에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과 R&D 사업을 주관하는 각 부처의 개별 법령이 산재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등 미비
- 각 부처는 부처가 제정한 개별 규정 위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R&D 관련 기본 법령과 개별 법령 간 괴리 발생,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 초래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제도상의 칸막이를 없애고, 연구비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념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사업 개념과 관련 법령

◎ 개념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사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 ※ 사업 분야 :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정보·전자, 생명 등

◎ 관련 법령

● 기본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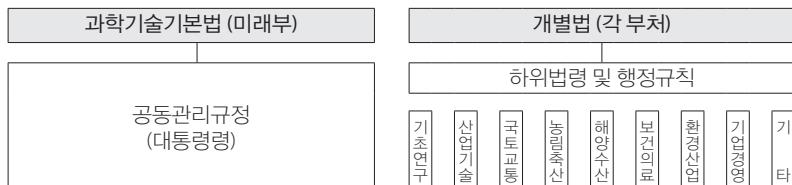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 ※ ’01년 이후, 부처 간 중복투자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본법령 마련

● 개별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정 운영·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체계 〉



2.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 정부 R&D 예산규모

- 국가연구개발비는 약 16조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를 차지 ('12년 기준)
 - '08년 대비, 예산 규모가 45% 증가 ('08년, 약 11조원 → '12년, 약 16조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예산(A)	11.1	12.4	13.7	14.9	16.0	9.7
총 세출 예산(B)	262.8	301.8	292.8	309.1	325.4	5.5
비 중(A/B)	4.2	4.1	4.7	4.8	4.9	-

※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종점분석” 및 NTIS

- 31개 부·처·청과 13개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관리 ('12년 기준)
 - 교육부(5조원), 산업통상자원부(5조원), 방위사업청(2조원) 3개 기관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75%(12조원)를 차지

〈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分	예산액	비 율	구 分	예산액	비 율
계	159,064	100.00			
1.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47,689	29.98	12. 기상청	812	0.51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118	29.62	13. 산림청	844	0.53
3.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3,092	14.52	1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797	0.50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7,535	4.74	15. 식품의약품안전처	595	0.37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150	4.50	16. 원자력안전위원회	560	0.35
6. 농촌진흥청	5,333	3.35	1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60	0.29
7. 국무총리실	4,305	2.71	18.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335	0.21

구 분	예산액	비 율	구 분	예산액	비 율
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70	2.49	19. 국방부	286	0.18
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908	1.83	20. 소방방재청	263	0.16
1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547	1.60	21. 안전행정부	155	0.10
11. 방송통신위원회	2,210	1.39	31. 기타	100	0.06

3.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관리
 - (중앙행정기관) 기본계획수립, 예산배분·편성 등 사업 주체
 - (전문기관) 정부로부터 업무를 대행 받아 연구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정부 출연기관
 - (주관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수주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업시행 주체

기관별	업무 내용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사업심의 등 예산 배분 방향 설정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 (각 중앙행정기관) 세부 시행계획 수립·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사업 관리를 대행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의 시행자 선정, 예산집행·정산, 평가 등 실질적 관리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주관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신규과제에 공모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한 기관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단독 또는 공동 시행하는 사업시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구소·대학·법인·기업 등

◎ 추진 절차

1)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선정은 ① 과제기획 및 공고 ② 계획서 접수
③ 과제 평가 · 선정 ④ 확정 및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
 - (과제기획 및 공고) 전문기관은 공모과제를 사전 기획한 후 신문 등 언론매체,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하 'NTIS')*, 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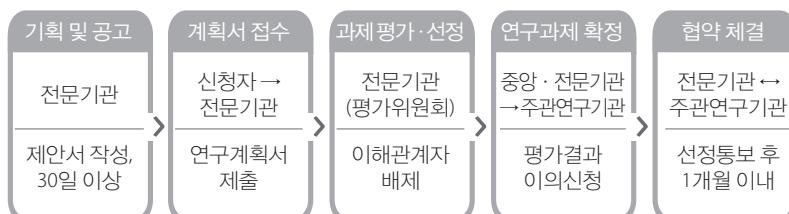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근거에 따라 개설한 포털로 각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 장비, 성과 등 R&D사업정보를 한곳에 등록 · 관리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 (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기관은 공고 요건 검토 후 사업계획서 제출, 전문기관은 결격 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 심사
- (과제 평가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수행 능력, 시설확보 정도, 과제 중복 여부,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평가 후 연구과제 선정

※ NTIS로 평가위원회 후보단(pool) 관리 ('12년 기준 30,212명)

- (확정 및 협약 체결)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시행 · 관리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 확정 후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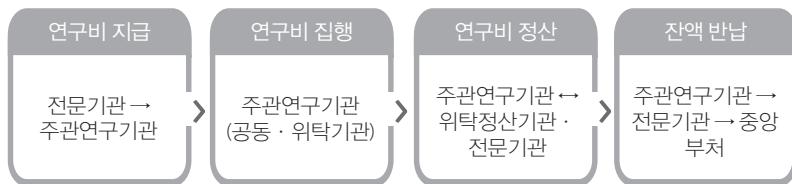
〈 과제선정 절차 〉



2) 연구과제 관리

- 과제 관리는 연구비 지급 · 집행 · 정산 · 정산잔액 반납 순으로 진행
 - (지급 · 집행) 전문기관은 과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개발비 지급 · 사용 · 관리 · 정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연구비를 지급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집행※ 주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정으로 설정 · 관리, 연구비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 (정산 및 반납) 전문기관은 매년 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 받음
- ※ 전문기관에 따라 자체 정산 또는 위탁 정산(공인회계사)
- ※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은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공동관리규정)('13.12 월말 종료)

〈 과제 관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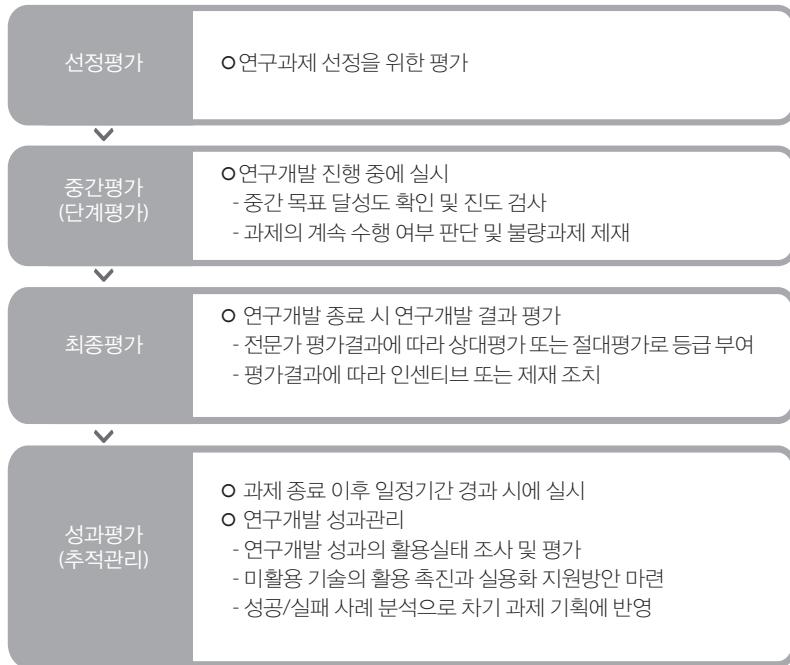
3) 연구과제 평가 및 제재

● 연구과제 평가

- 연구과제의 평가는 시행단계별로 ①선정 ②중간 ③최종 ④성과 평가로 구분

※ 전문기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결과 도출

〈 연구과제 평가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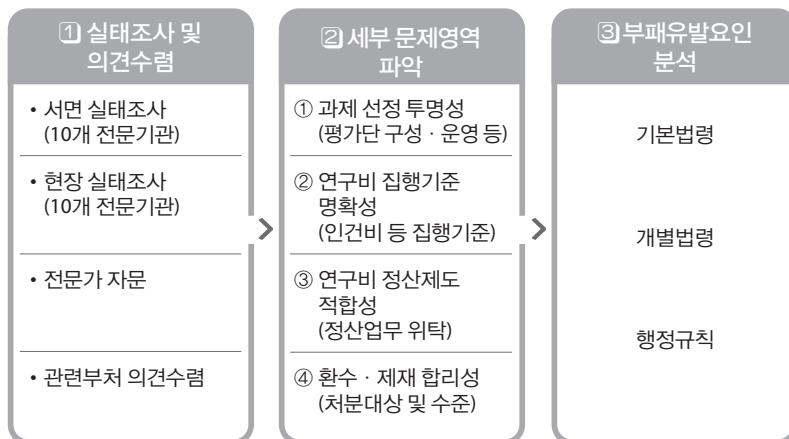


● 연구과제 평가 등에 따른 제재

- 연구사업 평가결과 불량 또는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등)
- 제재대상 및 수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해 각 부처별로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부실, 예산낭비 등 부패발생 요인 차단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 문제영역을 파악하고 영역별 부패유발요인 분석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실태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대표 전문기관 10개* 대상 실태조사 실시

기간	대상	조사내용
'13. 5.~7.	·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기본현황 파악 등
'13. 8.~9.	· 대표 전문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사업관리실태 파악 등

* 대표 전문기관 설정 배경 : 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행 받아 집행 · 관리하는 정부 출연기관이고, 미창부의 NTIS에 연구사업 정보를 등록 · 관리하는 대표기관이며,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실질적으로 적용 · 운용함에 따라 실태조사 대표 전문기관으로 설정

< 10개 대표 전문기관 >

- | | |
|------------------------------|---------------------------------|
| ① 산업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 ② 해수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해양원') |
| ③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원') | ④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 |
| ⑤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 ⑥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기원') |
| ⑦ 미래부 -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 | ⑧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원') |
| ⑨ 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건원') | ⑩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원') |

– 대표 전문기관 기본현황

(2013.8월 현재)

구 分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임·직원 현원(명)	167	45	288	192	351	95	304	88	155	73
② 사업예산 (억원)	7,647	2,274	3,516	2,045	20,825	4,067	30,084	3,824	3,120	1,663
③ 운영예산 (억원)	215	96	178	182	944	94	1,557	212	64	73
④ 전문가 pool관리(명)	10,589	2,829	7,086	8,675	23,764	11,712	67,689	2,561	23,922	8,661

● 전문가 자문 및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기 간	내 용	대 상
'13. 06.	·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4人)	· 학계·법조계 전문가
'13. 11.	· 개선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학계·법조계 전문가 · 관련 부처 의견수렴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상의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 문제영역 파악
 - ① 과제선정, ② 집행·관리, ③ 정산, ④ 환수·제재로 문제영역 구분

◎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관리 기본 · 개별법령(9개) 및 행정규칙(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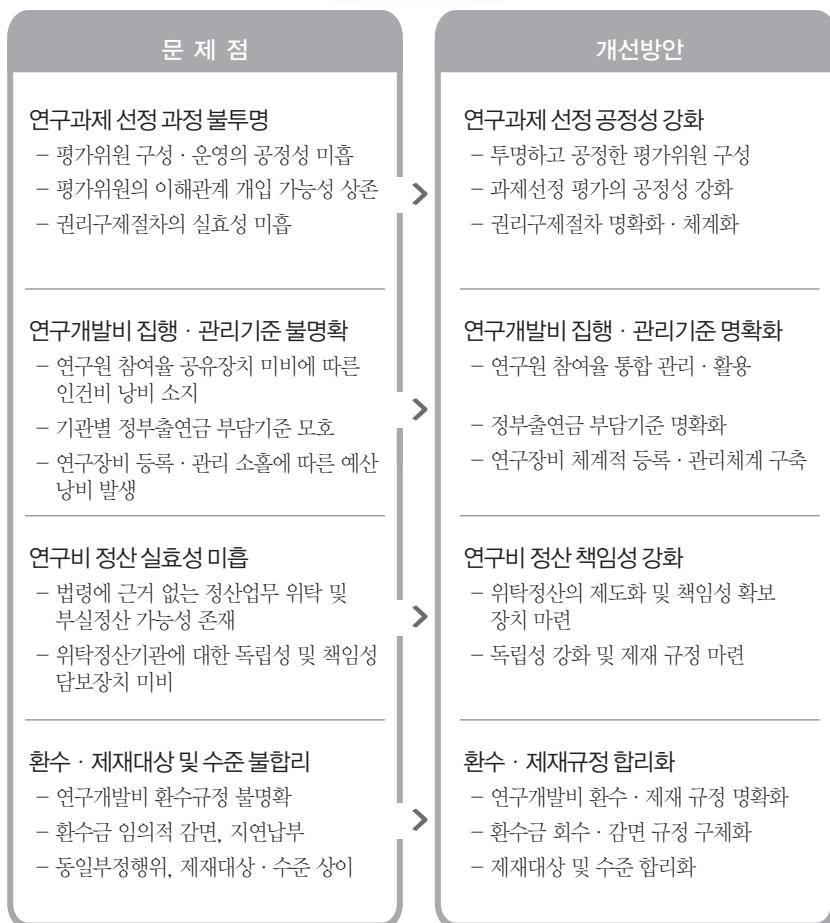
※ 선정기준 : 각 부처로부터 연구사업 관리업무를 대행 받은 대표 전문기관
(10개소)이 연구사업 추진 ·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 ·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

〈 평가 대상 법령 및 행정규칙 〉

구분	기본 ·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내용
법률 (9)	(기본)과학기술기본법	국가R&D사업 수립 · 추진 기본법
	(개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 지원 · 육성과 연구촉진
	(개별)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개발 · 혁신기반 조성
	(개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교통기술 연구 지원 · 육성
	(개별)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기술의 육성 · 지원
	(개별)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과학기술의 육성 · 지원
	(개별)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의 육성 · 지원
	(개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의 육성 · 지원
	(개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행령 (9)	(기본)공동관리규정 및 개별법 하위법령	국가R&D사업 추진 공동관리 규정
	(훈령)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훈령)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훈령)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훈령)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수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훈령)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문화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예규)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복지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훈령)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환경부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행정 규칙 (9)	(고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기청 R&D사업 세부추진 규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 연구과제 선정 과정 불투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위원 구성 · 운영, 이의신청 관련 규정

◆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평가위원 구성 · 운영 및 이의신청 규정 없음

〈공동관리규정〉 → 이의신청의 세부절차 ·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없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선정결과, 중간 · 최종 평가결과, 참여제한)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평가위원 제외대상)과 같다.

⑪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⑨ (생략)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 ⑯ (생략)

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⑲ ~ ⑳ (생략)

◆ 개별법령

〈평가위원 구성 · 운영〉 → 개별법령 8개 중 3개 법령에서 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9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이의신청〉 → 개별법령 8개 중 3개 법령에서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5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

◆ 행정규칙

〈평가위원 구성 · 운영〉 → 부처별로 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이의신청〉 → 부처별로 대상과 신청기한 등을 달리 규정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 현 황

- 각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평가단 구성 및 이의신청 제도 운영
 -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각 부처는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NTIS의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pool”)을 활용하고, 미래부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위원 pool을 NTIS에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법률적 근거 없음)
 - (평가위원 구성 · 운영 등) 각 부처는 평가위원 구성 · 운영, 이해관계 개입 방지장치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각각 규정(기본법령, 개별법령, 행정규칙)

◎ 문제점

- NTIS상의 평가위원 Pool 미활용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저해
 - 과제선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전문기관은 NTIS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전문기관마다 평가위원 pool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협소한 pool로 인해 전문성 확보 곤란
 - 또한, 평가위원 pool의 승인권을 전문기관이 갖고 있어 필요시 평가위원을 추가 등록할 수 있고, 평소 업무관계 있는 전문가를 특별위원 형식으로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자의적인 위원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저해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위원 pool을 운영·관리하는 이유>

- ①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술표준분류체계¹⁾가 서로 맞지 않아 NTIS 미활용
- ② 연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NTIS 연계) 거부로 자체 pool을 활용
- ③ NTIS의 pool자료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정도의 기본정보만 입력되어 있어 실제 전문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④ NTIS 활용시 절차가 복잡하고, 재검증·확인 절차가 별도 필요하여 불편

1) 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관리의 효율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 분류틀로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전문기관별 평가위원 구성방식 등 실태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평가위원 구성시 NTIS 활용 여부	미활용	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②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명)	10,589	2,829	7,086	8,675	23,764	11,712	67,689	2,561	23,922	8,661
③ 평가위원 pool 승인권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부처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④ 특별위원 구성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 '12년 기준 NTIS 평가위원 pool은 30,212명으로 전문기관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평가위원 pool을 운영·관리하여 평가위원을 구성(기본법률 상에 위원 구성 관련 근거 규정 부재)

→ 독립적 운영에 따른 협소한 평가위원 pool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특별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pool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어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 pool에 특정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 전문기관이 5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 pool에서 3~4人과 pool 이외의 외부 전문가(특별위원 규정) 1~2人을 구성

< 평가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사례 >

- ① 전문기관별로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 상에서 제재 중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pool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원, ○○원, ◇◇원, ▽▽원의 경우 pool 상에 제외하지 않거나 제재정보가 미등록된 상태로 관리(권익위, 2013.08~09.)
- ② △△원이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은 '13.8월 현재 5,706명으로 이중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1,264명(전체 22%),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391명(31%)으로 자체관리 중에 있는 평가위원 pool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권익위, 2013.08~09.)
- ③ ○○원 평가팀장 ○○○은 신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면서 NTIS에 의한 자동선정 절차가 있음에도 평소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4명을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대학을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감사원, 2011.06.)
- ④ ○○원은 '09년 신재생○○○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시 B업체의 경쟁사 임직원(정○○, 김△△) 및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신○○)을 구성·평가하여 A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B업체의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번복되어 결국 B업체가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권익위, 2013.08.)
- ⑤ ▽▽원은 '11년 "탄소저감 ○○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6건의 과제 평가 과정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결정이 없는데도 평가위원 pool 상의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분야(2명), 환경분야(1명) pool에 없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과제평가(권익위, 2013.08~09.)

● 과제선정 과정에 이해관계 개입 및 부실 평가 가능성 상존

- 신규과제 공고 전 과제기획을 통해 사업 제안서가 작성되는데 그 과제기획에 참여한 자(기획연구자·기획위원)가 본 과제의 수주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과제를 선정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 ※ 과제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상 1개월로 짧아 관련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연구자(기획위원 등)가 본 과제 수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또한, 신규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평가 업무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곤란

<전문기관별 과제기획위원의 본 연구 참여 등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 시례	-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②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 제한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약서)
③ 평가위원 제재 현황	사업 참여제한 및 처벌 등 제재규정부재(경고 및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하는 정도)									
④ 이해충돌 방지규정	제척회피 기피	제척	제척	제척	제척회피 기피	제척	제척	제척	제척	-

→ 전문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pool의 한계(협소)로 기획위원의 본 과제의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농기원의 경우 서약서 징구 이후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율 감소)

→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모든 전문기관에서 법률적 효력이 미약한 부정·부당한 평가 금지 서약서 징구 및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하는 수준의 제재가 전부이며, 이해충돌방지 장치도 제각각 운영

<기획위원 등이 본 연구과제 수주 사례>

- ① 정부출연연구소의 A연구원은 과제기획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연구 분야와 맞아 떨어지는 과제가 발주되도록 담당 공무원을 만나로비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대신하며 300억원이 넘는 신규 과제를 따냄(매일경제, 2013.04)
- ② ▽▽원이 '11년 "○○○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개발"(정부출연금 7,088 백만원/11.12~13.9)의 과제 시행자로 선정한 (주)○○○는 본 과제 공모 전 기획연구의 최초선정 및 최종평가에 참여한 기획위원으로 과제선정에 탈락한 (재)△△△ 권익위이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권익위, 2013.08~09)

● 신규과제 선정 탈락자를 위한 권리구제의 형평성 · 실효성 미흡

- 기본법령에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기관별로 이의신청 대상과 기한 등을 제각각 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형평성 저하
- 과제선정 평가를 했던 위원이 이의신청위원회에 다시 참여하여 심의하거나, 탈락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기구의 심의 없이 담당자가 자체 종결하는 등 권리구제의 공정성 · 실효성 미흡

<전문기관별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신청대상	평가, 제재	평가, 제재해약	평가, 제재정산	평가, 제재	평가, 정산	평가, 제재정산	평가, 제재	평가, 제재, 해약	평가, 제재	평가, 제재정산, 해약
② 신청제외	-	-	-	선정평가, 위원선정	-	-	위원선정	-	-	위원선정
③ 신청기한	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	통보 받은후 14일이내	통보 받은후 15일이내	-	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	통보 받은 후 7일이내	통보 받은후 7일이내	통보 받은후 14일이내	통보 받은후 10일이내	통보 받은후 10일이내
④ 이의신청 현황(반영)	19건 (5건)	13건 (1건)	366건 (0)	3건 (0)	127건 (5건)	417건 (36건)	608건 (46건)	7건 (0)	12건 (4건)	175건 (84건)
⑤ 이의신청 위원구성	선정평가 위원중심	-	선정평가 위원우선	-	선정평가 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선정평가 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 선정평가의 중요 절차인 평가위원 선정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규정을 운영하는 등(콘텐츠, 재단, 농기원) 이의신청 대상을 제한하고, 이의신청 기한도 최소 7일에서 최장 15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

→ 이의신청위원회가 선정평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 반영률이 낮음

→ 전문기관이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위주 또는 기관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로 종결처리하는 등 재평가의 실효성 결여

<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실효성 저해 사례 >

- ◉ 원은 2011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및 2011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5차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재평가위원 구성시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장을 참여 시키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미흡 및 평가의 공정성 저해(권익위, 2013.08.~09.)

◎ 개선방안

● NTIS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통한 평가위원 Pool 통합관리

- 기본 법률에 NTIS 자료입력 · 연계를 의무화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전문기관이 NTIS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Pool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법률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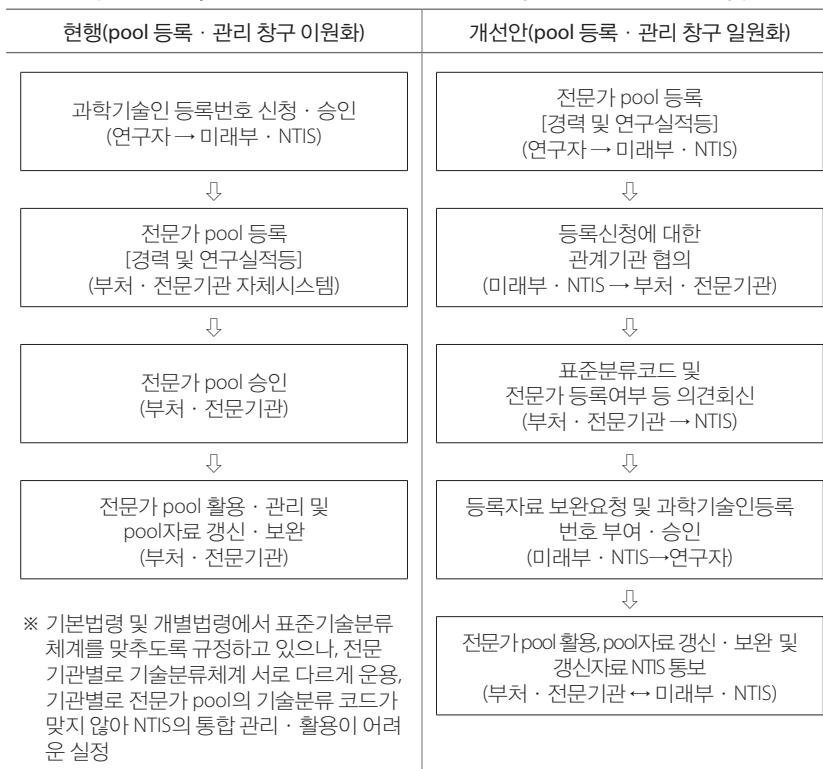
【규정예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NTIS 구축 · 운영 등 근거 법령 상향)

현행	개선안
<신 설>	<p>제○○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 등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가입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 등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2. 평가위원 후보단 및 평가결과3.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연구원 참여정보 포함)4. 연구비집행기준 및 연구비사용내역5. 연구시설 · 장비 등록 및 관리(불용 · 폐기 · 양도 등 변경승인사항 포함)6. 연구개발결과 공개 및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 정보7.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사업 참여 제한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협의(승인)를 받아 별도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관리 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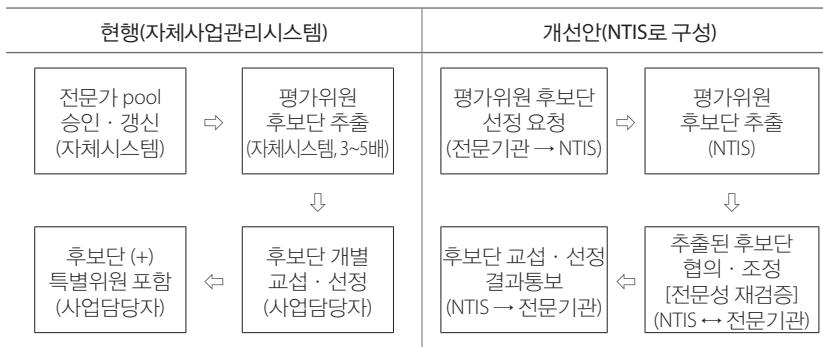
현행	개선안
<p><신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등</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등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 등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연구시설·장비 활용 및 관리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관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입력, 활용 등에 관한 실태를 평가하여 제12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정보의 구축범위, 운영절차와 재정상의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조(제재조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 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해당 제재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NTIS 상의 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예산심의·편성시 실적에 따라 기관 운영비 가·감 등)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 평가위원 pool 등록 · 관리 절차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 평가위원 추출 · 구성과정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 특별위원 구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국방 · 국가안보 또는 국외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선정평가 참여 위원의 공정성 강화
 - 평가 참여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차단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평가위원 구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평가위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
 - (참고의견) 신규과제 기획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획위원이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강구

【규정예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및 제재 규정)

현행	개선안
<신설>	<p>제○○조(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등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등에 관한 세부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공동관리규정 제7조 관련></u>	<p><대통령령></p> <p>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현행	개선안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0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 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연구비 횡령·유용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규정예시】 과학기술기본법(평가위원의 불법행위 방지 장치 규정)

현행	개선안
	<p>제○○조(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2. 제○○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 :::::::::::::::::::::</p>

2. 연구개발비 집행 · 관리기준 불명확

◎ 평가대상 조문 : 연구원 참여율 관리, 정부출연금 부담, 연구장비 활용 · 관리 관련

◆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원 참여율 관리 및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규정 없음

제28조(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 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 ·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공동관리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구인력, 연구시설 · 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 4. (생략)

5.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의 타당성

6. ~ 11. (생략)

④ ~ ⑪ (생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비 목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 4. (생략)</p>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p> <p>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② (생략)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 5. (생략)
 - ④ ~ ⑨ (생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⑨ (생략)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 · 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⑪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생략)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⑧ ~ ⑫ (생략)
- ⑯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⑭ ~ ⑮ (생략)
-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 5. (생략)
- ⑯ ~ ⑰ (생략)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 11. (생략)

◆ 개별법령

- 〈연구원 참여율 관리,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 관련규정 없음
〈연구장비 활용·관리〉 → 개별법령 8개 중 2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

◆ 행정규칙

- 〈연구원 참여율 관리〉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 부처별로 부담기준을 달리 규정
〈연구장비 활용·관리〉 → 부처별로 장비관리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규정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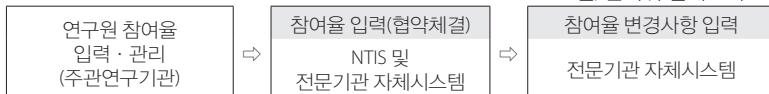
-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 정보를 관리하여 과제별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 지급
 - 각 부처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 정보를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NTIS에 연계하도록 규정 (기본법령, 행정규칙)
※ 참여율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참여율을 모두 합산, 130%를 넘지 않는 범위)
- 전문기관별로 구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 등록 · 관리제 운영 중
 - 전문기관은 과제선정 시 연구장비 구입 타당성 및 공동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구입된 장비는 NTIS에 등록 및 주기적 조사 · 점검하도록 규정(기본법령, 개별법령, 행정규칙)

◎ 문 제 점

- 전문기관 간 참여율 정보공유 장치 미흡으로 연구비 낭비 소지
 - NTIS를 활용해 연구원의 참여율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전문기관은 자체 시스템에만 활용 가능한 참여율 정보를 등록 · 관리
 - 인건비 지급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대한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 장치 미흡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연구비 낭비 원인 제공

<전문기관별 연구원 참여율 정보 입력 · 관리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참여율 관리는 최초 협약단계에서는 NTIS와 전문기관 자체사업관리시스템에 동시에 입력 · 관리되지만, 협약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NTIS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전 부처의 개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부처별로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

<연구원 참여율 관리 부실로 발생된 부패 사례>

- ① ○○원은 2009년도에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76억원을 재원으로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전 직원 370명에게 지급하는 등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가 2010년도에 2008년 대비 40.5% 인상
- ② ◇◇원 등 15개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한 5,086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15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362개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14,911백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 ③ 인건비 부당집행 및 횡령 · 유용 사례 (권익위, 2013.08.~09.)
 - ◆◆원이 '09년도에 추진한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 개발" ('09.3.1.~10.15. 정부출연금 598백만원) 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인 (주)△△의 이○○은 598백만원 중 41백만원을 실제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부당 집행
 - ◆◆원이 수행한 "친환경 다기능 미니 건설장비 개발" ('08.08.1.~'10.07.31. 정부출연금 890백만원) 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인 △△(주)의 조○○은 890백만원 중 450백만원을 자신의 동생업체(협력업체로 위장)로 송금 후 연구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횡령 · 유용

●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 기준 모호

- 전문기관별로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부담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고,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출연금 부담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량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될 우려

※ 예시 : 참여기관을 3개로 가정할 때, ①(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50%가 지원되고, ②(대기업+중견기업+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이 2/3이상이므로 60~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운용 실태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대기업	50%이하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이하	별도공고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미만
중견기업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60%이내	60%이내	60%이내	60%미만
중소기업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미만
중견+중소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	60%이내	60%이내	60%미만
3개이상중견2/3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	60%이내	60%이내	60%미만
3개이상중소2/3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미만
그밖의 경우	50%이하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이하	별도공고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미만

→ 동일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나 전문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부담기준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연구장비의 등록·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공동 활용 저해

- 정부는 중복적이고 불요불급한 장비구입의 억제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입한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및 부처 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전문기관별로 구입된 장비에 대한 통계파악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소홀 등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 공동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임대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 모호 등으로 시설·장비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꺼리고 있어 연구기관별로 불요불급한 장비의 중복적 구입으로 예산낭비 발생

<전문기관별 연구장비 관리제도 운영 실태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사전구입심사규정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
②주기적 관리규정	-	있음	있음	-	-	-	있음	있음	-	-
③불용 등승인규정	-	있음	-	-	-	-	있음	있음	-	-
④장비 통계관리실적	없음	329건	129건	없음	5,958건	없음	2,910건	421건	312건	17건
⑤과제종료 후 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⑥공동활용·이용 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⑦공동활용 실적	없음	5건	1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건

→ 전문기관별로 연구장비의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전 구입심사·주기적 관리·장비구입 이후 불용·폐기 등 변경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적용·운영

→ 정부에서는 구입된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문기관별로 공동활용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설정

< 연구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장비 등록 · 관리 부실 사례 >

- 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3개 연구기관이 2007.1.~2010.7.까지 구매한 연구장비 중 사용기간이 짧은 장비를 대상으로 임차비용과 취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차시장이 활성화된 스펙트럼분석기 등 16개 품목의 계측기에 대한 분석결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2,235백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 ② ○○원은 '09년 이후 구입한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총 75개의 연구장비 중 46개만이 NTIS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등록한 건수가 38건임. (△△대학부속 ○○병원 책임연구자 이외의 경우 연구장비 구입 후 486일 경과 후 등록) △△원 · ◇◇원 · ○○원은 구입한 연구 장비에 대하여 통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권익위, 201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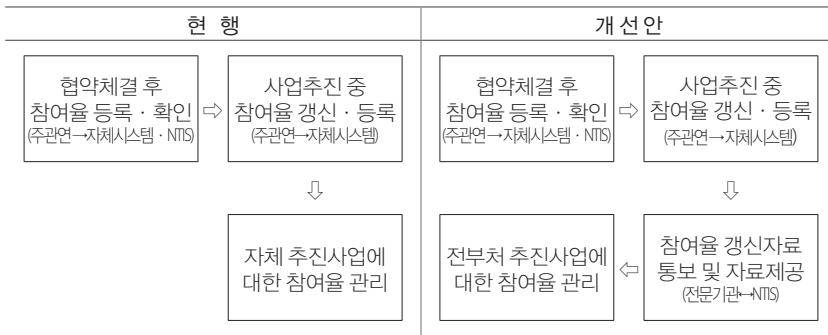
◎ 개선방안

● 연구원 참여율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 강구

- 기본 법률로 NTIS에 참여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 ·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원 참여율에 대해 통합적으로 활용 · 관리하는 방안 마련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NTIS 구축 · 운영 등 근거 법률 마련) p.153 참조

〈 연구자 참여율 관리 방안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 부처간 서로 다른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통일

- 전문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연구비 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출연금 부담기준을 구체화

※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중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은 미래부와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연구시설 ·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기본 법률로 NTIS에 등록 · 관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 ·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NTIS 구축 · 운영 등 근거 법률 마련) p.153 참조

〈 연구장비 관리체계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3. 연구개발비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 평가대상 조문 : 정산범위 설정 및 위탁정산 관련

◆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관련 규정 없음

〈공동관리규정〉 → 위탁정산 규정 없음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 14. (생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생략)

1. ~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③ ~ ⑪ (생략)

◆ 개별법령

관련 규정 없음

◆ 행정규칙

부처별로 정산범위 설정 및 위탁정산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 평가기준 :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1-2),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 현 황

- 기본법령에서 각 부처 소관 연구사업의 기획 · 관리 · 정산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문기관은 연구사업이 종료되면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연구과제 일부를 추출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집행한 연구비 사용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정산
 - 각 부처는 전문기관에게 정산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제각각 규정

◎ 문제점

-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 각 부처는 위탁정산기관의 부실정산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없이 전문기관이 정산업무를 민간 회계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정산의 및 예산낭비(정산수수료)의 원인 제공

※ 전문기관의 정산업무 위탁사유

- ① 전문기관이 연구비 정산업무에 필수적인 지식,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함
- ② 국회 및 감사원 등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정밀 정산을 요구
- ③ 전문기관별로 정산인력 대비 정산 업무량이 과다하고, 시기적으로 집중 되기 때문에 전체 과제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정밀정산 곤란

<전문기관별 정산제도 운영 실태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테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범위 설정	전체과제	일부추출	일부추출	-	전체과제	전체과제	5%추출	일부추출	-	-
② 정산방식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자체정산	자체정산	위탁	위탁	위탁

→ 기본법령에서 전문기관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산범위를 설정 하다 보니 정산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정산

————— <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정산기관 정산 부실 사례 > —————

- ① ○○원은 “다기능 고효율 직접제강 공정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정산 승인을 하면서 주관연구기관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된 시설공사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820백만원을 회계법인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정산 검사한 내용을 별도의 검증·확인 절차 없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최종 정산 승인 후 회계법인에 정산검사 수수료를 지급(감사원, 2011.06.)
- ② △△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승인을 하면서 ◎◎대학 책임연구원 최○○가 '09~'10년 까지 연구비에서 인건비, 시험분석비, 재료비 등 173백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은 적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도 회계법인의 정산검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처리. 이후 '11.8월 외부기관의 감사로 정산부실이 확인되었으나, 정산검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등이 없이 제4기 위탁정산기관으로 재선정(권익위, 2013.08.)

● 위탁정산기관의 독립적 정산업무 추진과 책임성 담보 장치 부재

-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정산수수료는 정산주체인 전문기관이 지급해야 하나, 피정산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에서 정산 수수료 지급(서로 다른 수수료 지급기준 운용)하고 있어 위탁정산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구조
- 위탁정산기관의 부실정산에 대해 수수료 환수나 정산업무 위탁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산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 담보 곤란

————— < 전문기관별 위탁정산 제도 운영 실태 >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수수료 지급	주관연구 기관	자체정산	자체정산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② 정산수수료(전원)	457,449	407,196	745,494	225,030	8,886,000	-	-	1,111,223	208,1398	50,576
- 건당 1억 이상	1,304	630	711	840	1,185	-	-	599	495	599
- 건당 5억 이상	1,812	900	1,225	1,080	1,647	-	-	1,000	858	944
- 건당 10억 이상	2,030	1,080	1,403	1,500	1,845	-	-	1,199	979	1,080
③ 부실정산 제재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 위탁정산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주관연구기관이 지급('09~'11년, 1400여억원)하고 있고,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전문기관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지급 기준을 운용(예기평의 경우 他전문기관에 비해 2배 이상 수수료를 지급)

→ 부실정산을 한 위탁정산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개선방안

- 정산업무 위탁의 제도화 및 위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전문기관의 효율적·체계적 정산업무 수행·관리를 위해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행정규칙이 아닌 기본법령이나 개별법령에 마련※ 전문기관의 정산업무 인력 한계와 정산 과제 수 과다 및 정산시기 집중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행화된 현행 업무시스템을 양성화·제도화
- 위탁기관의 정산업무 독립성 강화 및 부실정산에 대한 제재 규정 등 마련
 - 업무위탁 수수료를 전문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주관연구 기관과 위탁기관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정산업무 독립성 강화
 - 위탁기관의 정산업무 수행에 공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부실 정산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규정예시】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위탁정산 책임성 및 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현행	개선안
<신설> → 공동관리규정 상향 입법 등	<p>제 0 0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며, 부실 정산기관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p> <p>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위탁 한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현행	개선안
	<p>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정산업무 추진과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요건, 수수료 결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제3항에 따라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4. 연구개발비 환수 · 제재 규정 불합리

◎ 평가대상 조문 : 연구개발비 환수, 환수금 징수절차, 참여제한 규정 관련

◆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환수금 징수절차 규정 없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④(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③(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⑪(생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 ② ~ ⑧ (생략)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 → 개별법령 8개 중 6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2조 등 6개 법령

〈환수금 징수절차〉 → 관련규정 없음

〈참여제한〉 → 개별법령 8개 중 5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9조 등 5개 법령

◆ 행정규칙

부처별로 연구개발비 환수, 환수금 징수,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 현황

-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주관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 기본법령으로 환수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세부적인 환수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가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따라 환수대상과 수준 등이 서로 상이

〈 각 부처별 환수수준 등 규정 현황 〉

구 分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문체부	환경부	종기청
① 정산금 회수 기한 규정									
- 불량실패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 과제포기	전체 출연금 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출연금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 용도외 사용 (30%초과)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② 정산금 회수기한 규정	즉시납부	1개월내	-	30일내	-	-	-	-	-
③ 환수금 납부기한 규정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
④ 미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신규과제 선정감점	없음	없음	기관등 제재	신규과제 참여제한	신규과제 참여제한
⑤ 부도·폐업 등에 따른 미납금 추적 관리 규정	없음	5년간 추적관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년간 추적관리

- 또한,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구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기본법령으로 참여제한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따라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참여제한 대상과 수준 등을 제각각 규정

〈 각 부처별 참여제한 규정 현황 〉

구 分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문체부	환경부	종기청
① 성실실패	단축/면제	면제	단축/면제	1년	단축/면제	면제	단축/면제	2년/면제	1년/면제
② 과제포기	3년	면제~3년	3년	3년	3년	면제~2년	3년	3년	면제~3년
③ 기술료 미납	2년	1년~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2년	1년~2년
④ 용도외 사용									
- 금액기준	20~30%	20~30%	20~30%	20~30%	20~30%	-	20~30%	20~30%	20~30%
- 행위기준	횡령 유용	-	-	-	-	횡령 유용	-	-	횡령 유용
- 일시전용	-	경고	-	-	-	2년	-	-	-
⑤ 협약 규정 위반	2년이내	1년~2년	2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1년~3년	2년이내	2년이내	면제~3년

◎ 문제점

● 연구개발비 환수규정 불명확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대상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부처별로 환수대상 · 수준을 세분화 하여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환수의 형평성 저해

※ (예시) 기본법령과 개별법령의 환수대상 비교

- ① 연구결과 실패과제 : 기본법령) 해당년도 출연금 전액 환수
개별법령) 해당년도 출연금 일부 환수
- ② 연구비 목적 외 사용 : 기본법령)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금 환수
개별법령) 횡령 · 유용 등 행위를 기준으로 출연금 환수

〈 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상 환수대상 및 수준 비교 〉

기본법령 (미래부)	개별법령 · 행정규칙 (각 부처)
① 연구결과 실패(불량) [해당년 전액 환수]	(+) 성실실패, 성과활용부진, 부도등 중단, 협약위반 과제중단 등 [면제 · 해당년 전액 이내 환수 ~ 출연금 전액 환수]
② 연구내용 국내외 유출 [출연금 전액 환수]	(+) 보안, 비밀, 청렴의무 위반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출연금 전액 환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 [출연금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전액 미납 [없음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미납 [미납 기술료 이내 환수]	(+) 경영악화의 경우, 납부계획서 미제출 [없음 ~ 미납 기술료 이내 환수]
⑤ 연구비 용도외 사용(20%이하~30%초과) [해당년 전액 이내 환수]	(+) 1회전용 후 재입금, 시설장비 임의처분, 횡령, 편취, 유용 등 [없음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 출원 · 등록	좌동
⑦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선정 · 수행 [해당기간 전액 이내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위조, 변조, 표절, 외부압력, 하위, 청탁 등 구체화 [해당기간 전액 이내 ~ 출연금 전액 환수]
⑧ 그 밖에 협약 · 규정 위반 [경위 · 사유 등을 고려한 금액 환수]	→ 각종 보고서 미제출 · 하위제출, 부담금 미부담 등 구체화 [없음 ~ 출연금 전액 환수]

● 환수금의 임의적 감면과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규정 미흡

-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정부출연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5년²⁾)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미납금을 감면·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 환수가 곤란하고, 환수금 납부기간이 기관별로 달라 형평성 저해

<전문기관별 환수금 징수관리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과정에 따른 회수기한	1개월내	-	-	-	1개월내	-	즉시납부	-	-	30일내
② 환수금 납부기한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③ 환수금 미납 (09~'11년 사업종)	427건	106건	사	사	459건	사	139건	62건	사	229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58건	64건	업	업	270건	업	112건	48건	업	132건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51건	31건	별	별	143건	별	18건	6건	별	61건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313건	11건	관	관	25건	관	9건	6건	관	22건
-12개월 초과	5건	1건	리	리	21건	리	-	2건	리	14건
④ 미납자에 대한 제재등	-	-	신규과제 참여제한	기관등제 재	-	신규과제 참여제한	-	-	-	신규과제 선정감점
⑤ 미납자 5년간 추적관리규정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	없음	없음	없음

→ 과제 정산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기한 설정이 불명확하여 전문기관별로 미납 사례가 많이 발생(환경원, 콘텐츠, 중기원, 보건원→미납금 징구관리체계 미정립)되고 있고 미납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미하거나 규정되지 않아 환수금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저해

→ 미납자에 대한 추적·관리규정이 불명확하고, 전문기관이 임의로 미납금에 대한 회수를 종료('09~'11년까지 49억여원 면제)할 수 있는 구조

2) 정부채권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환수금 부당 감면 사례>

- ① △△원에서 2006.7.27. 경영악화 사유로 정부출연금 200백만원을 면제해 준(주)○○○의 경우 2008.12. 제10회 부산수출대상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 ② ◆◆원에서 2009.3.6. 폐업 했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73백만원을 면제해 준(주)△△△의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2011.01. 현재 일반과세자로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환수금 징수관리 부적정 사례>

- 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위원은 지경부 산하 연구 전문기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감독한 연구개발사업 중 총 173건 467억원에 이르는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 되거나 횡령됐으나 환수금액은 315억원으로 전체 67%에 불과(뉴스1, 2012.10.)
- ②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소관 R&D과제 수행내역'에 따르면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등의 사유로 총 14건 R&D과제에서 30억6,7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 이중 9건은 회수됐고 5건은 미회수된 상태로 국가R&D 예산에 대해 부당사용 요건과 제재규정 강화 필요(조세일보, 2011.09.)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과 수준 상이

- 기본법령 등에서 제재의 대상과 수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제재조치평가단에서 확정함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제재가 결정될 우려(기본법령)
- 전문기관별 서로 다른 제재대상과 수준으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과 일관성 결여(개별법령 · 행정규칙)
- 연구비를 횡령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횡령한 행위가 아니라 횡령금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 · 실효성 저해
※ 부처 내에서도 개별법령과 행정규칙이 서로 다른 제재수단 및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체계상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규정은 법령에 두는 것이 타당

< 전문기관별 제재수준 적용 실태 >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1) 참여제한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성실실패	면제	단축/면제	2년/면제	단축/면제	면제	1년/면제	단축/면제	단축/면제	면제	1년
② 과제포기	면제~3년	3년	3년	3년	면제~3년	면제~3년	3년	3년	면제~2년	3년
③ 기술료미납	1년~2년	2년	1년~2년	2년	1년~2년	1년~2년	2년	2년	2년	2년
④ 용도외 사용										
-금액기준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	20~30%
-행위기준	-	-	-	-	-	횡령·유용 (개별법령)	횡령·유용 (개별법령)	-	횡령·유용 (행정규칙)	
-일시전용	경고	-	-	-	경고	-	-	-	2년	-
⑤ 협약등 위반	1년~2년	2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1년~2년	면제~3년	2년이내	2년이내	1년~3년	2년이내

2) 연구비 환수

구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불량실패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② 과제포기	전체출연 금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출연 금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 금이내
③ 용도외 사용 -30%초과시	전체출연 금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 금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	해당년 전액이내

→ 보건원을 제외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의 범위(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참여 연구기관)가 불명확하고, 제재의 기준과 정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상이하며 기본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제재수준 보다 낮게 설정하기도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 곤란

※ 예시 : 총연구비 100백만원인 A사업과 총연구비 10백만원인 B사업 제재수준 비교할 때 B가 A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강한 제재처분 부과

제재수준	A 사업(총연구비 100백만원)	B 사업(총연구비 10백만원)
20%이하:3년	100백만원×20%=20백만원 이하 사용	10백만원×20%=2백만원 이하 사용
20%초과 30%이하:4년	100백만원×21%=21백만원 이상 사용	10백만원×21%=2.1백만원 이상 사용
30%초과:5년	100백만원×31%=31백만원 이상 사용	10백만원×31%=3.1백만원 이상 사용

◎ 개선방안

● 연구개발비 환수 · 제재규정 명확화

- 필요적 환수 대상(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에 선정 되었거나, 연구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과 임의적 환수대상을 구분하여 규정
-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수 · 제재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규정예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개별법(필요적 · 임의적 환수대상 구분)

현행	개선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주기)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규정예시】 공동관리규정(환수 · 제재대상을 행위규정으로 구체화)

현행	개선안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사유별 참여제한 및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5년 이내 <삭제>

현행	개선안																			
<p>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 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p> <p>6. ~ 8. (생략) ② ~ ⑩ (생략)</p> <p><별표5></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u> (제27조제9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환수사유</th><th style="text-align: center;">환수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 style="padding: 5px;">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body> </table>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p>6. ~ 8.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p> <p><별표5></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유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u> (제27조제1항 · 제9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유별</th><th style="text-align: center;">참여제한</th><th style="text-align: center;">환수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td><td></td></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② 인건비·편취·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 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 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u>5년</u> <u>횡령금 전액</u> <u>유용금 전액</u> </td><td style="padding: 5px;"></td></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 연구원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 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⑦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⑧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u>5년</u> <u>지급금 전액</u> </td><td style="padding: 5px;"></td></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⑨ 기타 조세법령에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⑩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⑪ 기타 특별한 사유로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u>3년</u> <u>전용금 전액</u> <u>처분금 전액</u> <u>4년</u> <u>목적외 사용 금액 거짓 작성된 금액</u> <u>3년</u> <u>…</u> </td><td style="padding: 5px;"></td></tr> </tbody> </table>	사유별	참여제한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② 인건비·편취·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 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 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u>5년</u> <u>횡령금 전액</u> <u>유용금 전액</u>		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 연구원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 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⑦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⑧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u>5년</u> <u>지급금 전액</u>		⑨ 기타 조세법령에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⑩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⑪ 기타 특별한 사유로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u>3년</u> <u>전용금 전액</u> <u>처분금 전액</u> <u>4년</u> <u>목적외 사용 금액 거짓 작성된 금액</u> <u>3년</u> <u>…</u>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유별	참여제한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② 인건비·편취·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 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 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u>5년</u> <u>횡령금 전액</u> <u>유용금 전액</u>																			
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 연구원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 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⑦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⑧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u>5년</u> <u>지급금 전액</u>																			
⑨ 기타 조세법령에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⑩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⑪ 기타 특별한 사유로 조세징수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u>3년</u> <u>전용금 전액</u> <u>처분금 전액</u> <u>4년</u> <u>목적외 사용 금액 거짓 작성된 금액</u> <u>3년</u> <u>…</u>																			

● 연구비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감면 규정 구체화

-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로 환수의 실효성 제고
- 환수금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환수금 관리규정 마련 (국세징수 관리 수준)

【규정예시】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환수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감면 규정)

현행	개선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 ④(생략) <u><신설></u>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 부과된 환수금의 감면 ·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산금 · 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 · 수준 구체화 및 동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유용 또는 사용명세서의 거짓보고 시 유용 · 횡령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방안 강구

[예시] →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제재수준 통일)

개선방향	개선방향 마련 참고 법령 · 규정
① 제재대상 설정 구체화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대표 또는 책임연구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5」
② 제재대상 · 수준 구체화 : 기본법령을 기준으로 「행정규칙」 구체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③ 제재수준 통일 : 기본법령의 제재수준으로 「행정규칙」 통일	「공동관리규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개별법」 (부정행위자 제재부가금 부과)

* 입법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5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2항 참조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연구과제 선정 투명성 강화	①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평가위원 pool 구성의 공정성 제고)	미래창조 과학부	'14.12.
	②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및 공무원 의제)	"	"
	③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
② 연구 개발비 집행 · 관리기준 명확화	①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연구원 참여율 통합관리 방안 마련)	미래창조 과학부	'14.12.
	②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행정규칙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합리화)	대상기관	"
	③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연구시설 · 장비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미래창조 과학부	"
③ 연구 개발비 정산 책임성 강화	①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정산업무 위탁 근거 법령에 마련)	대상기관	'14.12.
	②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
④ 연구 개발비 환수 · 재재 합리화	①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규정 명확화)	대상기관	'14.12.
	②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
	③ 기본 ·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 (연구부정행위, 재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	"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201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민 · 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